

국내입법의견조사 95-4

老人福祉法制의 改善

1995. 12.

연구자 : 金井順 (先任研究員)
宋永仙 (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第1編 老人福祉法제의 改善

I. 問題의 所在	7
II. 各界의 立法意見	9
1. 所得保障 問題	9
2. 醫療保障 問題	22
3. 住居保障 問題	26
4. 對人的·社會的 서비스 保障 問題	28
5. 財源調達 및 確保 問題	29
6. 人力과 組織體系 問題	31
7. 기 타	34
III. 立法方向	37
1. 各界意見의 整理	37
2. 立法方向	44

第2編 最近立法意見 動向 및 最新法令 紹介

I. 最近立法意見 動向	51
1. 最近立法意見 目錄	52
2. 最近立法意見 要旨	56

II. 主要立法預告法律案	94
1. 主要立法預告法律案 目錄	94
2. 主要立法預告法律案 內容	97
III. 最新法令 目錄	148

第 1 編

老人福祉法제의 改善

I. 問題의 所在

오늘날 경제성장의 결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꾸준히 연장되어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30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0년 2.9%, '70년 3.1%, '80년 3.8%, '90년 5.0%로 증가일로에 있고, 1994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65세이상 인구비중은 6%내외로 UN의 분류법에 따라 노령화사회를 65세이상 인구비중을 7%선으로 잡을 경우 21세기에는 노령화 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노년기는 생리적 및 육체적 약화,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 하락 등의 경제적, 정서적 불안정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된다. 노후생계대책의 미흡, 조기정년제도에 의한 젊은 노인들의 양산, 노령화로 인한 질병 및 장애발생률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보호의 어려움, 노인과 자녀의 별거지향, 노인의 욕구수준의 변화 등에 따른 생계문제, 건강보호문제, 주거문제, 역할상실과 여가문제, 고독과 소외 등의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이동 및 도시화현상 등으로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 양상을 띠면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와 경로효친사상으로 담보되어 온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현상은 노인문제를 더 이상 가족이나 개인문제로 돌릴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시켰고 여기서 노인복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라 해서 개인 및 가족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 차원에서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헌법 제10조, 제34조제1항), 노인의 복지향상 또는 노령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4조제4항·제5항). 따라서 노인은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령에 따르는 당연한 욕구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보호,

의료보호 및 보험, 국민연금, 노령수당, 고령자고용촉진 등을 위한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노인복지관련법이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제는 헌법상 노인의 생존권 보장을 토대로 노인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소득, 의료, 고용 등을 보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한 노인복지여건(환경)의 변화로 노인복지관련법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복지와 관련한 문제들을 아래와 같이 소득보장 문제, 의료보장문제, 주거보장문제, 재정문제(비용부담 및 재원조달 방안), 전달체계문제(또는 행정체계, 또는 공적·사적 주체) 등으로 나누어 그동안 학계, 실무계 등에서 개선되었던 의견들을 종합, 검토하여 노인복지관련법제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소득보장문제 : 이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현행 연금제도, 공적부조제도(생활보호, 노령수당), 정년제와 노인취업 등에 관한 문제이다. 급여수준의 문제, 급여대상(선정)의 문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금의 기업연금화 문제, 노령수당의 성격문제 등이 대상이 된다.
- 2) 의료보장문제 : 질병구조의 만성화로 인한 노인의료비용의 개인부담경감, 체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문제이다.
- 3) 주거보장문제 : 주택부조, 노인용주택의 보급, 노인양로시설의 다양화, 노인동거가족에 대한 우선 임대나 분양 등에 관한 문제이다.
- 4) 대인적·사회적 서비스 보장문제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노인 교육 등에 관한 문제이다.
- 5) 재원조달 및 확보문제 : 노인복지비용부담주체가 누구이며(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등), 급여자체를 위한 경비인 재원의 조달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 6) 인력과 조직체계문제 : 노인복지담당주체와 이에 관여하는 자, 노인복지대책위원회 등에 관한 문제이다.
- 7) 기타 : 노인의 정의(연령 정의), 가족부양강화방안 등에 관한 것이다.

II. 各界의 立法意見

1. 所得保障 問題

1) 國民연금

○ 최성재(서울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 근로자들에게는 노후에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므로 현행의 국민연금을 노후의 최저한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액각출과 정액급여의 기초연금과 그 위에 소득비례각출과 소득비례급여의 소득비례연금을 추가시킨 이원화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에 가입하여서 2008년까지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이 되어 정상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는 가입기간을 5~10년정도 단축하여 주는 것이 연금제도실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최성재, “노인복지 정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사회복지』, 1993년 봄호(116), 80쪽).

- 농어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고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향후 약 10년동안 20년에서 15년정도로 단축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금부터 가입하여 2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현재의 40대 이상의 농어민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기대를 현실적으로 갖기 어려울 것이다.

5년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도 액수가 대단히 적기 때문에 향후 10년간(농특세 부과기간) 한시적으로 농특세에서 지원하여 그 액수를 좀 더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특례노령연금 임의가입자 대상 연령을 60~64세에서 60~69세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촌 고령자의 특수한 사정과 현재의 남자의 평균연령이 70세인 점을 감안하여 특례노령연금 적용연령을 69세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성재, “농어민연금 기대효과 및 정책제안”, 『국민연금』, 1995년 9·10월호, 5쪽).

○ 최인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현행 연금제도는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는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988년부터 2007년 까지의 기간에 노령인구가 되는 연령계층에는 노후보장에 한계가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례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기본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미약한 실정이다.

더우기 국민연금제도에서는 현재 60세 이상에 도달한 자들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형평의 차원에서 차선의 가능한 경과조치가 검토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제도 내에서의 해결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도 연구검토됨으로써 모든 세대가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겠다(최인현, “한국의 인구전환과 노인복지”, 『사회복지』, 1991년 봄호(제108호), 152쪽).

○ 이상진(서울특별시, 산업정보국장)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수지역 연금제는 연금수령액이나 각출비 등이 실질적인 노인복지정책에 부응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는 반면, 대다수 일반인들은 아예 연금제도의 외곽에 놓여 있어 현저한 격차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연금제의 개선방향은 일차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목표가 두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연금기금의 적자누적현상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제의 전면실시는 막대한 재정수요를 촉발하기 때문에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국민연금제의 점진적인 확대실시정책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제가 전면 실시되기까지의 과도기적 시기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보완적인 제도적 대안으로 영국과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충급여제도와 노령수당지급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이상진, “노인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4, 120쪽).

○ 현외성(경남대학교 교수)

국민 대다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에서 배제된 노인들 즉, 1988년 당시 이미 60세 이상에 달한 노인들의 문제가 간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머지 않아 노인이 될 장년세대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정책 역시 미비되어 있다. 즉, 국민연금제도의 자격요건에서 볼 때, 1988년 당시 20년의 가입기간이 되지 못하는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장년층이 완전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이들의 장래 노후소득보장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물론 특례노령연금이나 감액노령연금이 있지만, 이 경우 급여수준이 노후소득보장에 어느 정도 적절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의 노인이 될, 현재의 장년층 중 국민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연령상의 문제로 인하여 가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연령계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이 요청된다(현외성, “노인소득보장”, 『21세기 노인문제와 복지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 1995년 10월 18일, 31~2쪽).

○ 유일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어 노인계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지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연금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방안은 연금각출률의 인상, 연금수급액의 축소,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연장, 그리고 연금기금의 수익률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연금기금수익률의 대폭적 향상은 현재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성격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연금수급액의 축소 역시 당분간 실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연금각출률 인상,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연장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

우선 연금각출률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9%로의 인상 이후에도 12%까지 인상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연장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조기퇴직을 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도록 근로유인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유일호, “노인복지정책개선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노인복지정책의 개혁과제 심포지

업』(민산정치연구소 주최, 1995.4.19), 주제발표, 9쪽).

○ 황민영(농어민신문사 대표이사)

정부가 농어민연금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지원, 연금보험료 분기납부제 도입, 관리운영비의 전액 국고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 농어민이 희망하면 특례가입하여 5년만 납입하면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71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고령 농어민에 대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완전 노후보장적 농어민연금제도가 시기상조라면 개인의 노력과 국가의 제도적 보장지원이 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개인복지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때, 개인복지 또한自助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어민복지, 특히 고령농어민의 문제는 시대적 산물이고 과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여가 있어야 하고 사회의 이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황민영, “농어민 연금에 바란다”, 『국민연금』, 1995년 3·4월호, 5쪽).

2) 생활보호

○ 최성재(서울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현행의 생활보호수준을 현실화하고 개인의 수입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에서 부족되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주택만 소유하고 전혀 수입이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재산 한도액을 높이는 것(예를 들면 비노인층 생활보호 대상자의 2배정도)이 바람직하다(최성재, “노인복지 정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사회복지』, 1993년 봄호(116), 80쪽).

○ 김주수의(전 연세대 법대 교수)

생활보호법은 사적부양우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노부모의 부양은 법적 보호의 공백상태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노인생활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첫째, 현행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극빈노

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양거절이나 유기된 사실상의 要부양자를 보호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적부조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보호대상자의 범위)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요부양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사법적 부양청구와 생활보호법에 의한 공적부조적 보호신청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법 제18조(보호의 신청)제2항을 신설·추가하여야 한다. 아울러 요부양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공적부조를 실시하는 보호기관에게 계도적 차원에서 이를 고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부양의무자가 요부양자를 유기한 때에는 보호기관이 부담한 보호의 비용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야 한다(김주수의 4인, "입법정책적 측면에서의 노인복지", 민법연구1(1991.7), 154~5쪽).

3) 노령수당제도

○ 유일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노령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 소득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이 수당은 특히 후기노인계층에 대한 지원이란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전반적인 소득증대와 더불어 현재와 같은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면 대상자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의 기준소득을 상향조정하고 수당의 수준을 현실화해도 재정지출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유일호, "노인복지정책개선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노인복지정책의 개혁과제 심포지엄』(민산정치연구소 주최, 1995.4.19), 주제발표, 12~3쪽).

○ 최성재(서울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노령수당을 생활보호의 보충급여로 통합하든가 아니면 국민연금법상의 무각출노령연금으로 편입시켜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급여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최성재, "노인복지 정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사회복지』, 1993년 봄호(116), 80~81쪽).

○ 박재간(노인문제연구소 소장)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령수당을 연금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적 부조의 성격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만으로는 이상 예거한 두가지 성격의 소득 보장 중 어떤 것에 속해야 할 것인지 분명치 않다.

만일 노령수당의 지급수준을 경제적으로 일정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지급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기 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현재 구빈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적부조형태 즉 생활보호법 내용 일부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노령수당은 분명히 구빈적 개념에서 파악될 성격의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노령수당의 규정은 구빈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법 내용중의 일부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령수당지급제도에 대한 개념정립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는 관계없이 오늘의 우리나라 노인들은 타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 빈곤의 원인은 개인에 있기보다는 사회변동의 영향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가 그 빈곤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러한 뜻에서 조세부담에 의한 노령연금제도의 발족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노령수당 지급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우선 그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 노령수당은 구빈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부조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공적연금의 유형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박재간, “노인의 수입보장과 취업의 확대방안”, 『사회복지』, 1990년 가을호(106호), 39~41쪽).

○ 김만두(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법 체계상으로 볼 때 노령수당은 본법(노인복지법)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며 또 이 수당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저소득계층 노인의 빈곤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은 연금제도와 같이 노인들의 경제적 소득보장을 본질로 하는 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당제도를 가지고서 노인의 경제보

장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연금제도가 발전되고 또 연금제도를 보충하는 노령수당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노인복지법상의 노령수당은 노령수당제도에 통합되어야 할 한시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1993, 469~70쪽).

○ 이상진(서울특별시, 산업정보국장)

다른 생계유지의 수단이 없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층의 생계비 부족 사례는 다른 어떤 문제에 앞서 해결해야만 할 과제이나 노인수당으로 최저생계비를 대체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체되어 충당되는 노인의 최저생계비 수준이 극히 열악한 현실 자체는 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급여를 현실화·적정화시켜야만 한다. 한편 급여 외에 공적부조제도로써 거택보호와 시설보호제가 있는데, 전체 생활보호노인의 비율은 증가하는데도 생계보호를 받는 거택보호와 시설보호 노인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거택보호, 시설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70세 이상의 거택보호 노인과 시설보호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 1만 5천원의 노령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연령을 낮추며, 자활보호 대상노인을 포함시켜 생활보호 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령수당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이상진, “노인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4, 114쪽).

○ 이찬진(변호사)

현재 노인복지법상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령수당제도가 고작이다.

원래 수당(Allowance)이란 인구학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무차별하게 지급되는 권리성 급여이어야 하나, 현행법상의 수당이란 일종의 공적부조일 뿐임. 그것도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중에서도 극빈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수당은 아니다. 그러나 이 규정조차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지침(모법에서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되어 있는 수급자격이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70세로 정해져 있어서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임)때문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노령수당을 진정한 수당제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중에서

공적연금수급자, 퇴직금수급자, 자산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자, 국외거주자, 재소자 등을 제외한 모든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임.

단, 국가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노령수당제도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당분간은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에 한해서는 예외로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가정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서 국가가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사후에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후보장과 경로효친사상을 절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된다(이찬진,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과 대안”,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한국노인문제연구소·한국노인의 전화 주관,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개정 공청회』(1995.2.23), 주제발표, 9~10쪽).

○ 이성호(보건복지부 장관)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노인에 대하여는 노령수당 인상과 취업기회 확대를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유도하여 나갈 계획임.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을 연차적으로 그 수령액을 인상해 나가며, 지급대상도 정부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65세까지 확대하도록 할 것임. 이와 함께 고령자 적합직종을 현재 20개에서 '97년까지 50여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임. 또한 노인능력은행 등 취업알선기관을 활성화시키고 노인공동작업장을 증설함과 동시에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함(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 취임인사 - 노인복지종합대책 마련·시행”, 『노인생활』, 1995년 7·8월호, 4~5쪽).

4) 노인취업

○ 최성재(서울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노인취업 증진을 위한 법규의 개정·엄격한 적용 및 민간의 협조 유도 :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현재의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직종개발 규정(제14조)과 특별직종에의 노인우선선정 규정(제15조 및 제16조)을 엄격히 시행하고 특히 구속력이 없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고용 규정(제12조 등)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엄격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

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보건복지부업무규정)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의 규정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령자인재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최성재, “노인복지 정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사회복지』, 1993년 봄호(116), 81쪽).

○ 유성호(한국노인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합한 53개의 직종(공공기관 22개, 일반기업체 31개)을 선정하여 그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노인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게 세금감면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여 많은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예산을 증가시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취업정책을 대폭 확대시켜야 하며, 국가와 민간기업체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고령자취업의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유성호, “노인취업의 문제점과 개선책”, 『노인생활』, 1994년 7·8월호, 14~5쪽).

○ 황윤기(민자당 국회의원)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300인 이상 고용작업장은 정원의 3%를 고령자로 우선 고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 노인들에 의하면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는 그들도 “여전히 일하고 싶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문제의 정책 초점은 이같은 사실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취업과 관련한 유일한 법인 고령자고용촉진법이 노인고용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를 의무사항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고령자 고용 기준률을 상향조정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노인고용의무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노동력을 갖고 있는 상당수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은 노인의 직접적 소득 확대기회가 될 뿐더러 이를 통해서 노령수당이나 전국민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에 따르는 정

부의 재원조달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황윤기, “노인복지”, 『노인생활』, 1994년 11·12월호, 10쪽).

○ 이상진(서울특별시, 산업정보국장)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에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3%로 정하여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에서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력을 의무화하기는 하였지만, 벌칙이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중 적용대상의 기준을 낮추고 이를 실제적인 의무규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도입하는 등 법적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의 노인들을 위해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적용기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게 기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주어 재취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인재취업정책은 노인공동작업장을 통해 약간의 용돈을 조달하는 데 그쳤을 뿐 본격적인 재취업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므로 노인재취업 프로그램은 지금까지의 소극적 정책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취업프로그램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하며 그 주체도 대한노인회 등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포함된 범국민적 차원에서 새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재취업의 실질화를 위해 노인재취업이 가능한 업종을 적극 개발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이상진, “노인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4, 107~8쪽).

○ 김수춘(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된 노인직성 직종('95년 현재 20개 직종)에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한다.
- 현재 300인 이상 기업체의 3%고령자(55세 이상) 취업 권장사항을 100인 이상 기업체로 확대하고 기준고용률도 3%선에서 6%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기관부터 이를 의무화하고 점진적으로 일반기업체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여 고령자 고용이 의무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초과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촉진 제도가 정착되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 현재 『고용보험법』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55세 이상인 자를 상시근로자수의 6%이상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자 1인당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기업에서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자 취업보호 조치로서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업우선권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현재 『고용보험법』상에 50세이상의 고령자가 실직에 대비하여 자비로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빈곤한 노인이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업하는 경우와 경제적인 이유는 부차적인 반면 보람있는 사회참여를 목표로 하는 중산층 이상 노인의 취업에 대한 구별적 접근이 요청된다.

(김수춘, “노인의 사회참여”, 『21세기 노인문제와 복지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1995.10.18), 주제발표, 106~7쪽).

5) 정년제도

○ 김수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기업의 90%이상이 60세 이하 정년제(55세 이하는 64.3%)를 채택하고 있어 평균수명의 연장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고, 정년 퇴직한 후에는 재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이 60세인 데 비하여 현행 정년연령은 55세 전후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후의 소득보장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연장과 출산율 및 사망율의 감소추세로 인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현재 55세 전후로 되어 있는 정년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정년의 연장은 고령근로자의 복지는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부의 창조에

충점을 맞추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년연장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퇴직후 감액임금 재고용제, 시간제 고용, 퇴직금 산정방식의 조정 등 다양한 재취업 기회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정년연장 유인책으로서 정년연장 장려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김수춘, “노인의 사회참여”, 『21세기 노인문제와 복지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1995.10.18), 주제발표, 100, 107쪽).

○ 최성재(서울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현재 55세로 거의 고정되어 있는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까지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노령연금의 수급시기는 정년과 일치됨으로 소득보장의 목표를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는데 현행제도상으로는 55세에 퇴직한 후 5년을 기다려야 노령연금(기본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5년동안은 소득보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년과 노령연금수급시기의 일치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정년은 60세로 연장되어야 할 것이다. 60세까지로의 정년 상향조정은 앞으로 노동시장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성재, “노인복지정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사회복지』, 1993년 봄호(116), 81~2쪽).

○ 최인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평균연령이 70세 이상으로 연장되고,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단독가구는 전체가구의 5%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욕구는 증가할 것이며, 현행 조기정년제를 재검토하여 노년기의 취업기회가 확대보장되어야 할 것이다(최인현, “한국의 인구전환과 노인복지”, 『사회복지』, 1991년 봄호(제108호), 153~4쪽).

6)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

○ 김주수외(전 연세대 법대 교수)

연금제도의 확충의 한 방법으로는 1988년부터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기업의 법정퇴직일시금제도를 사적 기업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복지연금법의 실시에 따라 기업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부담과 국민복지연금법상의 사용자부담이란 이중의 부담을 하게 되므로 이를 경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지급액은 노사협의로 조정·결정하고, 이로 인한 기업의 적립금은 사외에 적립하며, 퇴직급여충당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김주수의 4인, “입법정책적 측면에서의 노인복지”, 민법연구1(1991.7), 154쪽).

○ 최성재(서울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현재의 퇴직금제도도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퇴직시의 일시불 보다는 퇴직후 일정기간 또는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매월 지급하는 기업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성재, “노인복지 정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사회복지』, 1993년 봄호(116), 81쪽).

○ 정종태(국민은행 종합기획실 조사역)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해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바, 공적연금,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의 정부, 기업 및 개인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노후보장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의 진정한 역할이 아직 미지수이므로 개별기업의 사정에 적합한 기업연금제도의 개발을 통하여 3층보장론에 입각한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후의 생활보장에 있어 공적연금은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수준 이상의 것까지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후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정종태, “우리나라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공적연금과의 상호보완기능을 중심으로”, 『조사월보』, 94년 7월호(제283호), 국민은행, 3, 12쪽).

7) 기타

○ 최성재(서울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사회보장의 일차적인 목표는 최저한의 생활보장이므로 사회보장에 의한 급여로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기는 어렵다. 현행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년간입을 기준으로 할 때 40%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 정도의 소득으로는 최저한도의 생활 아니면 약간의 여유있는 생활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노후의 보다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개인저축이 필요하다. 국가에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을 이용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 및 의식화하고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금융시장을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노후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방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최성재, “노인복지 정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사회복지』, 1993년 봄호(116), 82쪽).

2. 醫療保障 問題

○ 최성재(서울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i)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의 목표는 비노인층으로 하여금 예방적인 노력을 하게 하고 노후의 상병에 대하여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의료진료와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①노인의료비 개인부담 경감 : 노인의료비는 현재 비노인층의 2배 가까이 되고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의 본인부담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②가정방문 간호서비스 비용지원 :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방문간호서비스 비용은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전담하도록 하고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간병 서비스의 제도화 : 노인이 가정에서 가족의 간호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무료 및 유료의 가정간병인과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④노인전문 의료시설의 건립 : 노인병 진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적 노인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노인병원과 특수노인병원(정신

병원, 치매노인병원 등)을 지역적으로 적절한 수로 건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건립 및 운영주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정부와 민간부문이 될 수가 있으며 특히 국가는 민간이 이러한 시설을 건립하도록 적극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의료시설의 건립과 운영에도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성재, “노인복지 정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사회복지』, 1993년 봄호(116), 82~3쪽).

ii) 노인수용시설 비용부담 : 현재 실비 및 유료 노인요양시설의 비용은 의료보험에서 전혀 부담되고 있지 않고 있다. 노인요양 시설은 일종의 보건·의료 시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비용의 일부는 의료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나머지는 입소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최성재, “노인소득보장”, 『21세기 노인문제와 복지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 1995년 10월 18일, 81쪽).

○ 최인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노년기의 만성병에 대처할 수 있는 노인병을 전담할 수 있는 노년병과가 종합병원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사회를 통한 농촌노인들의 의료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재가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겠다(최인현, “한국의 인구전환과 노인복지”, 『사회복지』, 1991년 봄호(제108호), 153~4).

○ 박재간(노인문제연구소 소장)

고령화사회, 장수하는 사회가 도래했다고는 하지만, 많은 비율의 노인들은 건강한 상태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유병장수 또는 반건강상태에서 장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고통거리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보다 염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은 의료보험에 있어서의 본인부담의 몫중, 일부를 국가재원에서 각출하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노인보건법에 의해서 70세이상의 노인전원과 65세에서 69세까지의 노인으로서 일정한 장애가 있음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그 비용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해당노인은 의료비의 5.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95.0%는 국가가 20.0%, 지방자치단체가 5.0%, 그리고

70.0%는 의료보험과 관계되는 각제도의 보험가입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제도는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박재간, 『노인복지법의 허·실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공청회』(대한노인회주최, 1989.1.30), “노인복지법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 『노인생활』, 1989년 1·2월호(68호), 48~9쪽).

○ 황윤기(민자당 국회의원)

노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다른 문제는 노인의료보장제도이다. 우리도 여건만 허락한다면 선진국처럼 1차, 2차, 3차로 연계구분되는 노인보건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하겠다. 즉 1차 진료에서는 가정간호제도 내지 Family Doctor체제를 통해 각종 노인병을 조기 발견하도록 하고, 2차 진료에서는 노인환자들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내 노인병동시설 및 노인병과를 설치하여 노인질병의 집중전문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3차 진료에서는 1, 2차 진료를 통해 치료된 질병의 재발방지 및 주로 장기요양진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일련의 의료전달체계가 그것이다(황윤기, “노인복지”, 『노인생활』, 1994년 11·12월호, 10쪽).

○ 이성호(보건복지부 장관)

금년 중에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하여, 건강상담·보건교육강화를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요양·재활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에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보건소를 노인성질환 1차진료기관으로 육성하겠다. 특히 치매노인을 위한 대책으로 현재 6개소를 신축중인 치매전문요양시설을 '98년까지 16개소로 확충하고, 한국치매협회 산하에 치매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 예방과 진단·치료기법개발을 위한 진료시설과 치매원격진료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며, 치매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족의 보호능력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치료가 가능하나 장기간 입원진료가 필요한 노인 또는 회복기에 있는 노인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98년까지 설치하도록 국민연금기금이나 재특자금을 통해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겠다(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취임인사 - 노인복지종합대책 마련·시행”, 『노인생활』, 1995년 7·8월호, 5쪽).

○ 이찬진(변호사)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은 현재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노년기의 건강악화 및 행동장애 등을 고려할 때, 노인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더불어 특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보험법상 급여기간 외에 노인성 질병들에 대해 보험적용을 할 수 있는 특별 급여에 대한 규정을 의료보험법에 규정하든지 아니면 노인복지법에 현행 의료보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급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 사회법(Sozialrecht)의 경우, 현금급여 중심의 사회법제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의료보험개혁을 통해 의료보험급여목록에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한 거동불능에 대해 생활간호급여(Pflegehilfe)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의료보험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현행 노인복지법 제9조의 건강진단과 더불어 간호급여를 포함하는 노인의료특별급여에 관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이찬진,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과 대안”,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한국노인문제연구소·한국노인의 전화 주관,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개정공청회』(1995.2.23), 주제발표, 10쪽).

○ 한달선(한림대학교)

①장기요양은 시설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요양이 환자에게 더 바람직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따라서는 가족이 돌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전문직업인의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②장기적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의 다양한 직종이 참여해야 할 것이나, 수요가 적은 상태에서는 일부 직종에 의한 서비스부터 제공하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함이 효율적일 것이다. 가정방문 요양서비스를 조직하고 관리할 기관으로서는 병원, 보건소체계, 새로운 독립적 조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③노인요양시설은 현재 수용능력이 극히 적고 기능도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기본적 발전방향부터 설정하고, 그러한 방향에서 법률적 근거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노인요양시설의 증설을 추진해야 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

양환자에게는 최선의 시설로 자리매김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해서 불우노인을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노인요양원을 노인복지시설로 법제화한 것이 그 발전에 장애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설립자격과 설치기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주체,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적절한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한달선, “노인의료보장”, 『21세기 노인문제와 복지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 1995년 10월 18일, 14~17쪽).

3. 住居保障 問題

○ 이찬진(변호사)

주거보장에 관한 현행 노인복지법 제17조는 전혀 무의미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산업화에 따른 가족의 해체는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별거를 촉진시키며, 이는 당연히 노인들에게 주거에 대한 욕구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주택수당, 임대료보조 및 할인, 주택수리비 및 개조비 보조 및 융자, 임대료 및 재산세 감면, 공영주택입주권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이찬진,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과 대안”,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한국노인문제연구소·한국노인의 전화 주관,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개정공청회』(1995.2.23), 주제발표, 10~11쪽).

○ 최성재(서울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의 목표는 노인단독세대나 노인동거세대가 현재의 소득범위내에서 “1가구 1주택의 소유”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의 거주”의 원칙으로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①주택부조 도입 : 자활보호대상자의 주택유지비 또는 주택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주택부조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②노인용주택의 보급 : 자녀와 동거 노인

을 위해서는 노인에게 편리한 구조를 가진 공간분리형의 3대 동거주택과 별거노인을 위해서는 노인전용주택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전용주택은 일반주택지역에 비노인층 주택과 혼합하여 건설할 수도 있고 별도의 지역에 노인주택을 집합적으로 건설할 수도 있을 것(예를 들면 노인촌, 노인전용 아파트단지)이고,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노인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노인용주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소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주택의 건설자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노인양로시설의 다양화 및 증설 : 일반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대안적 주거시설로서의 노인양로시설은 앞으로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와 비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개발하고 수도 늘려가야 할 것이다. ④주택의 임대나 분양에 있어서의 노인동거가족에 대한 우선처우가 요청된다(최성재, “노인복지정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사회복지』, 1993년 봄호(116), 84~5쪽).

○ 박재간(노인문제연구소 소장)

①유료양로시설은 수혜자가 입소료의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규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것을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노인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②선진각국에서는 양로원이라는 명칭을 노인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명칭을 노인의 집(home of the aged) 또는 간호의 집(nursing home for the aged) 등으로 개칭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양로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시설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동시에 그 명칭도 현대감각에 부합되도록 개칭하도록 한다(박재간, 『노인복지법의 허·실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공청회』(대한노인회 주최, 1989.1.30), “노인복지법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 『노인생활』, 1989년 1·2월호(68호), 50쪽).

4. 對人的·社會的 서비스 保障 問題

1) 대인적 서비스

○ 이찬진(변호사)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시설수용과 재가서비스에 대한 임의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간호, 보호, 안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관리·운용과 이러한 서비스제공에 대한 구체적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사업(노인복지법 제20조의2)에서 방문 간호(또는 가정 간호)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노인의료보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서비스이다(이찬진,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과 대안”,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한국노인문제연구소·한국노인의 전화 주관,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개정 공청회』(1995.2.23), 주제발표, 11쪽).

○ 이성호(보건복지부 장관)

핵가족화·여성취업 증가 등으로 가정에 홀로 남아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확충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양가족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 먼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확대하여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병원안내 등 각종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질병·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낮동안 또는 수일간 계속하여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위해 주간보호(Day-Care) 및 단기보호(Short-Stay)시설도 확충하여 나갈 것이다(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취임인사 - 노인복지종합대책 마련·시행”, 『노인생활』, 1995년 7·8월호, 5쪽).

2) 사회적 서비스

○ 김주수의(전 연세대 법대 교수)

①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그 실천이 기대되었으

나 그 시행령에서는 비용의 부담부분을 모호하게 규정한 노인복지법을 보완하여 노인복지전문가를 지방자치단체와 노인학교(대학) 등에 배치하여 노인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여가선용과 노인교육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예산이 노인복지법에 신설되어야 한다. ②노인의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노인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법을 개정하여 노인학교(대학)명칭을 삽입하고, 공인된 학교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지원하는 한편, 노인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노인학교학생을 포함한 전국의 노인을 그 교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노인교육전담기구설치의 법적 근거로서 사회교육법을 개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김주수의 4인, “입법정책적 측면에서의 노인복지”, 민법연구1(1991.7), 151~2쪽).

5. 財源調達 및 確保問題

○ 이상진(서울특별시, 산업정보국장)

i) 노인복지비용은 공적부문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위주로 하여 충당되어야 한다. 국가경제발전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비용투자가 대폭적으로 증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복지비용의 일부는 민간부문에서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최저생계보장과 관련된 기초적 복지사업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되 그 이상을 넘어서는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수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민간서비스의 유료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사회복지는 “무료”라는 인식을 지양하고 부담능력이 있는 수혜자로 하여금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고 질 높은 사회적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서비스전달의 책임성도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ii) 사회복지예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재정규모를 확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담율만큼의 재정책대를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정책대가 해결책의 전부는 아니지만 복지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된다(이상진, “노인복지정책의 실태분

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4, 119, 128~9쪽).

○ 김주수의(전 연세대 법대 교수)

사회부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노인복지예산에 관하여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예산조치를 노인복지법시행령에 위임하지 말고, 모법에 직접규정하는 한편, 복지사업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한다는 모호한 규정 대신 강한 실천의지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특히 복지세를 신설하는 세법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노인정과 같은 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명문화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세제와 주택면에서 3세대가정을 지원하고 노인단독세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노인임대아파트, 노인타운, 무료양로원 등을 확충하는 한편 경로우대제를 실효성있게 하기 위하여 특급열차·고속버스에도 확대적용하고 영세업체들에게 경로우대실시에 따른 그 비용지원이나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김주수의 4인, “입법정책적 측면에서의 노인복지”, 민법연구1(1991. 7), 154쪽).

○ 박재간(노인문제연구소 소장)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대간 소득재분배기능의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통해서 조달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세제개편의 방안으로는, ①중산층 이상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소득세의 누진율을 강화하던가 또는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②기존의 시한부 목적세인 방위세, 교육세의 일부를 점진적으로 노인복지세 쪽으로 대체해 나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목적세를 또하나 신설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으며, ③골프장, 카지노, 터어키탕, 고급주택과 고급가구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 노령수당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④또한 지하경제소득의 현재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강화를 통해서 불로소득에 대한 세원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하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한 세금포탈액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원을 발굴하는 행정적 조치만 강화해 나

간다면 국가가 복지예산의 재원이 없다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확보의 방법은 이상 예거한 바와 같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세출구조의 재조정을 통해서 전체 세출예산중 사회복지부문예산의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다(박재간, “노인의 수입보장과 취업의 확대방안”, 『사회복지』, 1990년 가을호(106호), 42~3쪽).

○ 이찬진(변호사)

국가부담의 원칙이 규정된 타당한 사회복지입법일지라도 그것이 실제 국가예산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률과 예산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이다.

i) 법률로써 예산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규정들이 “한다”, “하여야 한다” 등의 강행규정으로 이루어지거나, 더 나아가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등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매우 강력하게는 “국가 전체 예산의 ○○% 이상을 할당한다” 등의 규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ii)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조세수입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구체적인 재원을 명시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이찬진,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과 대안”,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한국노인문제연구소·한국노인의 전화 주관,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개정공청회』(1995.2.23), 주제발표, 14쪽).

6. 人力과 組織體系 問題

○ 이찬진(변호사)

국가의 복지행정이 법적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체제와 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복지행정이 법치행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행정조직에 관한 것이 사회복지의 전달체제이다. 전달체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현행법의 규정에서 민간기관의 각종 보고, 승인, 허가, 민간기관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을 볼 때,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간을 동

반자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와 구속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적인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ii) 이러한 전달체계속에서 실제로 노인복지업무를 맡게 되는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 역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현행법에서는 노인복지상담원(법 제7조)을 시·군·구에 두게 되어 있는데, 민간기관 및 시설의 인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인권,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서는 민간기관의 일선 서비스제공인력에 대해서 법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iii) 국가의 노인복지행정에 대해서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노인복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 또한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 일관되어 있다. 위원회는 최소한 심의기구로서의 권한과 역할이 주어져야 하는데, 현재 규정상 성격은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노인복지법 제5조제1항). 또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원칙, 기능과 권한, 회의 등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되어야 실효적인 위원회를 보장할 수 있는데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되고 있다. 게다가 상임위원회로서의 실효성을 위한 회기, 권한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성의 원칙 역시 국무회의의 축소판일 뿐이다(시행령 제3조). 또한 전달체계의 각 단위별로 위원회가 필요하다. 다른 사회복지법들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법만은 예외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대책위원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이찬진,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과 대안”,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한국노인문제연구소·한국노인의 전화 주관,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개정공청회』(1995.2.23), 주제발표, 12~13쪽).

○ 김만두(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다른 사회복지관계법상 각종 위원회가 모두 보건사회부장관 소속임에 비해 노인복지대책위원회만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법체계상 또는 그 법적 효과면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1993, 459쪽).

○ 박석돈(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들에 대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할 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상담원은 아동복지지도원·장애인복지지도원 또는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사회복지의 각 분야별 전문성이나 개별적 특성을 강조한다기보다 generic caseworker를 요구하는 규정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관련 각 법의 지도원자격이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의 수준에서 전문성이 크게 못미친다는 비판이 있는데 하물며 타분야에까지 겸직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박석돈,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1995, 318쪽).

○ 이상진(서울특별시, 산업정보국장)

노인복지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수요를 사전 예측하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행정체계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축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총무처, 국방부, 교육부, 보훈처, 노동부, 건교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노인복지행정을 통합·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비서실에 사회복지담당 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정책을 통괄하는 부총리제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인력의 활용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데 우선 공적 전달체계를 현재의 내무부의 행정체계에서 분리하여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과(특별시, 도) - 사회복지사무소(시, 군, 구) - 사회복지출장소(읍, 면, 동)로 연결되는 별도의 실무체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ii)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의 요원으로 공무원 임용에 사회복지직을 신설하여 정책 및 임상의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민간차원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시험제도에 의하여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서비스 전달주체를 다양화하고 양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특히 실질적인 민간주체를 더욱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간주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유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제도적인 공적주체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보

완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사회복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비용으로 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여 민간주체에 위탁운영시키는 절충적 방법에 의한 위탁민간주체도 공적주체와 민간주체의 장점을 살릴 수만 있다면 계속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이상진, “노인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4, 124~7쪽).

7. 기타

1) 노인의 연령규정

○ 임춘식(한남대학교 교수, 행정학)

노인의 연령규정에 있어서 노인들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남녀별, 빈곤노인, 노약(질)노인, 시설보호노인과 재가노인 등의 연령규정에 탄력성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임춘식, 『노인복지법의 허·실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공청회』(대한노인회주최, 1989. 1.30), 토론발표, 『노인생활』, 1989년 1·2월호(68호), 59쪽).

○ 유일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선진각국의 보편적인 정년과 연금지급연령이 65세이기 때문에 부양대상인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지칭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보편적인 퇴직연령은 55세로 되어 있고,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60세로 되어 있는가 하면 또한 노인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제도와 사회법률적 규정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부양대상의 노인인구를 규정해야 할지 불분명하지만 55세에서 60세 사이가 퇴직연령인 경우도 있고 국민연금의 연령을 60세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양대상인구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을 연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인 퇴직연령과 노인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상향조정되면 그때의 부양노인은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유일호, “노인복지정책개선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노인복지정책의 개혁과제 심포지엄』(민산정치연구소 주최, 1995.4.19), 주제발표, 4~5쪽).

2) 가족부양의 강화

○ 김주수의

- 노인의 주거와 생활 안정 등 정서적 복지를 위한 다른 한 방안인 가족부양의 측면에서는, i) 부부간의 부양이나 부모의 미성숙자에 대한 부양이 1차적 부양의무인 데 비해 조부모에 대한 부양은 2차적 부양의무로 이해되고 있는 현행 민법상 부양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 제974조(부양의무)를 개정하여야 한다. ii) 또한 기여분제도를 신설하면서 「기여의 내용」을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주된 기여로 보고, 부양으로 인한 기여를 부차적인 정도로 취급한 듯한 입법태도(민법 제1008조의2 참조)는 불합리하다고 본다.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한 자손에게는 상속의 경우에 부양의무의 이행이란 기여분을 평가하여 고유의 상속분에 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iii)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에게는 그의 부양·요양·간호 등에 대한 보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권자에 대한 분여)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 가족제도면에서는 결혼한 딸이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생활형태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교육·계몽과 아울러, 현행 父系型家族制度에서 雙系型家族制度로 그 법적체계의 재확립이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는 직계비속여자가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이 아니더라도 妻家入籍婚姻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법 제826조제3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김주수의 4인, “입법정책적 측면에서의 노인복지”, 민법연구1(1991.7), 142~3, 152~3쪽)

3) 법체계상의 문제

○ 박재간(노인문제연구소 소장)

노령수당·의료혜택·우선취업조항을(대한노인회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연금법·의료보험법·노동관계법에서 다루는 것이 정상적이기는 하나 그러자면 여러 개의 법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다는 점을 감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노인복지법에 포함시켰다해서 법이 른상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다. 둘째, 가족보호 또는 경로효친의 규범을(대한노인회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배제했다는 점인데, 가족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가족법(민법 제974조, 제975조, 제976조)을 보완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고, 효규범과 경로에 관한 사항은 윤리기본법 같은 것을 새로이 제정해야지 이러한 것을 사회복지의 성격을 띤 노인복지법에서 다루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박재간, 『노인복지법의 허·실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공청회』(대한노인회주최, 1989.1.30), “노인복지법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 『노인생활』, 1989년 1·2월호(68호), 44쪽).

○ 이병하(대한노인회회장)

이 법개정안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묶어 놓았다는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노인종합복지법의 성격을 띠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노령수당과 관련된 법은 무각출노령연금법에 의해서 해결하고 있고, 노인에 대한 의료혜택은 노인보건법 또는 노인의료보호법에 의해서, 그리고 노인취업과 관련된 사항은 고령자취업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법을 각기 부문별로 분리해서 입법화할 것인지 또는 본 대한노인회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이를 종합해서 하나의 법으로 묶어 입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토론이 필요하다. 노령수당, 의료혜택, 우선취업 등의 조항을 이 법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각기 해당조항을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노동관계법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 위법과 연계시키자면 이상 3개법 모두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길이 없으므로 우리 대한노인회로서는 단일종합법으로 묶었음을 밝혀둔다(이병하, 『노인복지법의 허·실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공청회』(대한노인회주최, 1989.1.30), 개회사, 『노인생활』, 1989년 1·2월호(68호), 28, 30~31쪽).

○ 이찬진(변호사), 윤찬영(전남대, 사회복지학)

국가책임에 관하여 임의규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론상 균형이 맞지 않으며 정당하지도 못한 태도로서 노인복지법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유료노인복지사업은 실제로 복지가 아니며,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복지대상자를 수요자로 하는 민간 영리사업을 조정 및 감독하는 별도의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의 규범적 목적에 합당할 것이다(이찬진,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과 대안”,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한국노인문제연구소·한국노인의 전화 주관,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개정공청회』(1995.2.23), 주제발표, 7~8쪽).

Ⅲ. 立法方向

1. 各界意見의 整理

1) 소득보장문제 : 이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현행 연금제도, 공적부조제도(생활보호, 노령수당), 정년제와 노인취업 등에 관한 문제이다. 급여수준의 문제, 급여대상(선정)의 문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문제, 노령수당의 성격문제 등이 대상이 된다.

가) 국민연금

i) ①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이 배제된 노인들, 즉 1988년 당시 이미 60세이상에 달한 노인들, ②미래의 노인이 될 현재의 장년층 중 국민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③1988년 당시 20년의 가입기간이 되지 못하는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장년층의 경우 국민연금급여가 없거나 급여수준이 완전노령연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런 자들에 대해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ii) 그리고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서 노후대책을 위한 적절한 소득보장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연금제도를 현행 정액각출과 정액급여의 기초연금과 그위에 소득비례각출과 소득비례급여의 소득비례연금을 추가시킨 이원화제도로 개선하자는 의견, 개인연금·저축을 장려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자는 의견 등이 있다.

iii) 연금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금각출률의 인상, 연금수급액의 축소,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연장 등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다. 이는 연금각출률을 12%까지 인상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고 아울러 대부분 55세로 되어 있는 정년도 연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나) 생활보호

현행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자격·급여수준에 대하여 ①보호대상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이상의 노쇠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과 관련하여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의 유기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주택만 소유하고 전혀 수입이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재산한도액을 높혀 생활보호대상자로 하자는 의견, ②현행급부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③개인의 수입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에서 부족되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다.

다) 노령수당

i) 현행 노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여 1995년 현재 70세 이상의 거택·시설·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월 2만(단, 80세 이상 거택·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노령수당지급대상·지급금액과 관련하여 ①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와 같이 생활보호 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령수당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65세 이상의 노인중에서 공적연금수급자, 퇴직금수급자, 자산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자, 국외거주자, 재소자 등을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노령수당제도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당분간은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에 한해서는 예외로 하거나 아니면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가정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서 국가가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사후에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의견, ②수당금액을 상향조정하자는 의견 등이 있다.

ii) 노인복지법상의 노령수당의 성격과 관련하여 연금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빈대책으로서의 공적부조의 성격으로 규정할 것이냐로 견해가 나누어진다. 전자로 파악하는 경우는 연금제도를 보충하는 노령수당제도 또는 한시적인 무각출 노령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따라서 노령수당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라) 노인취업

노인취업과 재취업의 증진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직종개발 규정(제14조)과 특별직종에의 노인우선선정 규정(제15조 및 제16조),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고용 규정(제12조 등) 등이 있다.

i)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직종개발 규정(법 제14조제1항)과 특별직종에의 노인우선선정 규정(법 제15조·제16조)에 대하여 이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ii) 고령자고용촉진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제1항, 제3조·제4조에서는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면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3%로 정하여 300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①고령자 고용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법제화하거나 실제적인 의무규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 ②고령자 고용기준율을 상향조정 예컨대 3%에서 6%로 올리자는 의견, ③지방의 노인들을 위해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적용기준을 낮추자는 의견, ④정부 및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노인고용의무화를 제도화하자는 의견 등이 있다.

iii)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보건복지부업무규정)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고용정보센터(제10조) 및 고령자인재은행(제11조)의 규정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iv) 기타 55세 이상인 자를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초과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상

의 고령자고용촉진제도가 정착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노인의 취업·재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상에 50세 이상의 자가 실직에 대비하여 자비로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의견,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업하는 경우와 경제적인 이유는 부차적인 반면 보람있는 사회참여를 목표로 하는 중산층 이상 노인의 취업에 대한 구별적 접근을 하자는 의견 등이 있다.

마) 정년제도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60세인 데 비하여 현행 정년연령은 55세 전후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후의 소득보장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정년제의 개선방안으로 정년과 노령연금수급시기의 일치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정년은 60세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바)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일시금제도에 대해서 사적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퇴직금제도는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부담과 국민연금법상의 사용자부담이란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들어지고 있고, 나아가 이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급여충당액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사) 기타

사회보장에 일차적인 목표는 최저한의 생활보장이므로 노후의 보다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기적·개인적 저축장려 및 세제혜택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 의료보장문제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의 목표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의 상병에 대하여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의료진료와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①노인건강관리법(가칭)을 제정하여 건강상담·보건교육강화를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요양·재활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자는 의견, ②노인 의료비 개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의료보험에 있어서 본인부담의 몫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타의 재원으로 부담하자는 의견, ③노년기의 건강악화 및 행동장애 등을 고려할 때 의료보험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간호급여를 포함하는 노인의료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의견, ④보건소를 노인성질환 1차진료기관으로 육성하자는 의견, ⑤노인병 진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적 노인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전문 의료시설을 지역적으로 적절한 수로 건립하자는 의견 등이 있다. ③의 경우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노인 또는 회복기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가정과 시설에서의 노인요양서비스가 이에 해당되며, 전문직업인의 가정방문서비스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전담하도록 하고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자는 방안, 장기요양시설 이용비용을 의료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 제안되고 있다.

3) 주거보장문제

노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쇠퇴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주거시설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적부조로서 주택부조의 도입, 임대료보조 및 할인, 주택수리비 및 개조비 보조 및 용자, 임대료 및 재산세 감면, 공영주택입주권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규정하자는 의견, 노인용주택을 보급하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소규모의 임대주택으로 많이 건설하자는 의견, 일반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대안적 주거시설로서의 노인양로시설을 서비스와 비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확충하여야 한다는

의견, 유료양로시설은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의견 등이 있다.

4) 대인적·사회적 서비스 보장문제

가정에 홀로 남아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확충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양가족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히 거동불편노인에게 식사·병원안내 등 각종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과전센터를 확대하자는 의견, 노인의료보장과 관련하여 재가복지사업규정(노인복지법 제20조의2)에서 방문간호(또는 가정 간호)사업을 명시하자는 의견 등이 있다.

노인의 정서적 복지를 위해 노인의 여가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노인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경로당과 노인학교의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5) 인력과 조직체계문제

①각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노인복지행정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사회복지담당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정책을 통괄하는 부총리제를 신설하자는 의견, ②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공적 전달체계를 현재의 내무부의 행정체계에서 분리하여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과(특별시, 도) - 사회복지사무소(시, 군, 구) - 사회복지출장소(읍, 면, 동)로 연결되는 별도의 실무체계로 하자는 의견, ③사회복지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의 요원으로 공무원 임용에 사회복지직을 신설하자는 의견, ④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상담원의 자격이 전문성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의견, ⑤서비스전달주체를 다양화하여 공적 주체, 민간주체, 위탁민간주체로 확대하여 각자의 장점을 살리도록 하자는 의견, ⑥민간기관의 일선 서비스제공인력에 대해서 법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다. 또한 ⑦노인복지법상 국무총리소속의 노인대책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체계상 또는 그 법적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 전달체계의 각 단위별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 최소한 심의기구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위원회의 구성·운영원칙·기능과 권한·회의 등에 대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6) 재원조달 및 확보문제

노인복지비용은 공적부문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위주로 하여 충당되어야 하나 국가의 재정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복지비용의 일부는 민간 부문에서 조달되어야 하며, 노인의 기초적 복지사업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되 그 이상을 넘어서는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수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민간서비스의 유료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반론이라 할 수 있다.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복지예산의 증액, 복지세의 신설, 지하경제의 조세화, 기업 혹은 민간기금화, 노령복지복권발행, 수익자부담 등이 거론되고 있다.

7) 기타

가) 노인의 정의(연령정의)

노인의 연령규정에 있어서 노인들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남녀별, 빈곤노인, 노약(질)노인, 시설보호노인과 재가노인 등의 연령규정에 탄력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나) 가족부양강화문제

노친부양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산상속의 기여분제도에 있어서 「기여의 내용」에 부양으로 인한 기여를 평가해주고 또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에 서도 부양·요양·간호 등에 대한 보상을 해주며, 나아가 가족제도면에서는 부계형가족제도에서 쌍계형가족제도로 그 법적 체계의 재확립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시된다.

다) 법체계상의 문제

노인복지의 각 부문을 분리해서 입법할 것인지 노인복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입법방식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에 있어서 현행의 노인복지체계가 법이론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 다만, 유료노인복지시설 사업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두는 것은 입법론상 균형이 맞지 않으며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복지대상자를 수요자로 하는 민간영리사업을 조정 및 감독하는 별도의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2. 立法方向

1) 규범체계의 확보

법률이 제정되었다 해도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정되는 경우, 그 법률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노인복지법상 경로사업(제12조), 노인직종 개발 및 취업보장(제14조), 생업지원(제15조), 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의 지정(제16조), 노인주택(제17조) 등의 복지조치조항에 대해서 시행령에서는 관련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행정부서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될 수 밖에 없어 규범적 실효성이 미약하므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령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노인복지 대상의 확대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이상 노인사이에 별로 큰 차이없이 건강보호문제, 여가선용문제, 소외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노인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국가책임의 확립

- 헌법 제34조제4항·제5항은 노인 또는 노령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은 노인복지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관련법 규정들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과 “노력(조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특히 노인복지법의 복지조치 관련규정을 보면, 노인건강진단등(제9조), 경로우대(제10조), 경로사업에 대한 지원(제12조제2항), 노령수당(제13조제1항) 규정 등은 “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형식을 취하고 있고, 경로사업의 실시(제12조제1항), 직종의 개발(제14조), 생업지원(제15조), 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의 지정(제16조), 주택(제17조) 등에 관한 규정은 “노력(조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형태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국가의 책임이란 재량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법적 강제 책임을 뜻하기 보다는 행정편의적 책임에 그칠 가능성이 많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노인복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조치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서구의 선진복지국가에서 제기되어 온 “복지국가위기론”에 이어 나타난 현상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과 아울러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라 할 수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반영하는 복지다원주의에 입각하여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와 비영리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축으로 하여 영리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최저선 확보는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
- 고도경제성장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예산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4) 통합노인소득보장제도의 수립

i) 현행 노인소득보장제도는 생활능력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와 생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부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소득보장제도가 상호독립적이고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통합된 노인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연금보험, 생활보호사업 및 노령수당제도를 통합하거나 노령수당을 부가급여 형태를 띤 무각출노령연금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감액노령연금급여가 2003년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급여가 2008년부터 개시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충급여의 성격을 띤 무각출 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에는 국민적 합의와 여건성숙이 필요하므로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여 우리의 현실에 적절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ii) 기타 노령인구에 대한 소득보장방안으로 정년연장, 취업보장, 퇴직금의 기업연금화, 개인의 자립의존도를 높이는 노력과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5) 의료보장

노인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인 큰 부담없이 의료진료와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i) 입법방식상 노인질병의 사전예방과 사후치료·요양·재활 서비스를 포괄하는 별도의 노인건강관리법(가칭)을 제정하거나 또는 기존의 의료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ii) 구체적인 의료보장내용으로는 ①노인의 연령계층에 따라 노인의료비 개인부담의 몫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재원으로 부담시키며, ②시설이나 가정에서 간호급여를 포함하는 노인의료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③노인병진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위해 노인전문의료시설을 지역적으로 적절히 건립·배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 노인복지의 대상이 중산층이상의 재가노인에게도 확대되어 노인에 대한 간호 및 보호문제가 노인복지에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이므로 가족의 노인간호·보호 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시켜 주는 가정봉사원제도, 간병인제도, 가정방문 간호제도 등 재가복지를 확대·발전시키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6)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와 규제

1980년대부터 노인문제가 저소득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

에게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 특히 건강보호문제 및 가족간의 갈등문제와 노인들의 독립적인 가구구성의 욕구 등이 중산층 이상의 노인사이에 크게 확산되면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민간측에서 경제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용체계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측에서는 시설 및 서비스의 질이 비용에 상응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료노인복지 시설부분에 대해 민간영리부문의 참여를 허용함에 있어서 정부는 먼저 빈곤·저소득층의 기본적인 노인복지시설(무료·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유료시설과의 격차를 줄여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유료화로 인해 노인층 자체를 구분화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이 점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第 2 編

最近立法意見 動向 및 最新法令 紹介

I. 最近立法意見 動向

○ 분류기준표

분 야	대한민국헌행법령집해당항목
憲 政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統一·外交·國防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內務·地方行政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社會·文化·教育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38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產 業·經 濟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채·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農 林·水 産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建 設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科學技術·交通·遞信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環 境·保 健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法 院·法 務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2), 제9권9형사법

1. 最近立法意見 目錄

(1995. 7. 1. ~ 1995.12.10)

◎ 憲政	56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영해법 개정의견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헌법 개정의견	
◎ 統一·外交·國防	58
○ PKO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군인연금법 개정의견	
○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 內務·地方行政	59
○ 공무원연금법 개정의견	
○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 관변단체지원관련 입법의견	
○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의견	
○ 서울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인위재난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자치경찰제도입관련 입법의견	
○ 정부조직법 개정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개정의견	
◎ 社會·教育·文化	64
○ 가정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교육공무원법 개정의견
- 교육법 개정의견
- 근로자파견관련 입법의견
- 기능대학법개정안관련 입법의견
-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의견
- 노인복지관련 입법의견
- 대학원 교육개혁관련 입법의견
- 방송법 개정의견
- 시간제근로자고용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여론조사관련법(가칭) 제정의견
- 외국인근로자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개정안관련 입법의견
- 의료보험법 개정의견
-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의견
- 청소년유해간행물의유통규제에관한법(가칭) 제정의견
- 학교용지확보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産業 · 經濟 75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관세법 개정의견
- 국제영업활동지원법(가칭) 제정의견
- 대외무역법 개정의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부가가치세법 개정의견
- 상표법 개정의견
- 세법관련 입법의견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의장법 개정의견
- 인삼사업법 개정의견
- 제조물책임법(가칭) 제정의견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
- 중소기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통계법 개정의견
-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한국은행법 개정의견

- ◎ 農林 · 水産 82
 -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개정의견
 - 농지법 · 농지법 시행령 개정의견

- ◎ 建設 84
 - 건설업법 개정의견
 - 건축법 시행령 개정의견
 -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의견
 - 유료도로법(가칭) 제정의견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의견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의견
 - 풍수해 대책법 개정의견

-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86
 - 교통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국유철도 경영 개선을 위한 특별 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기상업무법 개정의견
 - 전산망보급 확장 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
 - 지식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의견
 - 해운법 개정의견

- ◎ 環境 · 保健 88
 - 식품 · 의약품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의견
 - 식품위생법 개정의견

- 연안역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지역별의료기관개설허가제한등에관한규칙 개정의견
-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의견

◎ 法院·法務 90

- 5.18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로스쿨도입관련 입법의견
- 부정수표단속법 개정의견
- 소년법 개정의견
- 양성평등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정보공개법(가칭) 제정의견
- 출입국관리법 개정의견
- 행정조정법(가칭) 제정의견

2. 最近立法意見 要旨

(1995.7.1. ~ 1995.12.10)

◎ 憲政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단체장과 의회선거 분리 또는 광역선거와 기초선거 분리 등 4대 지방선거를 2차례에 나눠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이춘구 전 신한국당대표).
- 전국구의원 증원문제와 관련지위서는 비례대표가 최소한 전체의 3분의 1은 되어야 함(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 전문직 인사들의 지역구진출이 어려운 만큼 전국구를 늘릴 필요성이 있음(박지원 국민회의 대변인).
- 망국적인 지역할거구도의 고착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 차선책으로 현행 소선거제를 중선거구제로 개정해야 함(박일 민주당 공동대표).
-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전국구 의원을 99명으로 늘리며, 전국구의 경우 독일처럼 지역구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전국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서정화 신한국당 총무).
- ①현행 소선거구제도가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대표하지 못하고, 선거에서 많은 사표가 나올 뿐 아니라 1선거구에 1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당선지상주의가 탈법, 불법, 금권정치를 야기하며, 지역감정 해소에도 도움을 못주는 등 선거의 왜곡현상이 너무 높고, ②중·대선거구제는 같은 정당후보가 경쟁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택폭이 좁아져 정책보다 인물중심으로 투표하는 폐단이 있으며, ③1인2투표의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극소화할 수 있고 유권자의 지지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고, 정치꾼이 아닌 새로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인물이 의회에 진출하기에 유리함(어수영 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

: 한겨레 95.7.6., 1면; 경향 95.9.18., 3면; 조선 95.10.19., 2면; 중앙 95.

11.3., 2면; 세계 95.11.24., 1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79~80면) · 제94-6호(79~80면) · 제95-2호(80~81면) 참조

○ 영해법 개정의견

- 대한해협을 영해기점으로부터 12해리까지 관세·출입국관리·위생과 관련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접속수역 선포를 골자로 법을 개정하고, 위반시 벌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국제 벌금 수준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함(외무부).
- 「영해법」 개정안은 쓰시마와의 거리가 24해리에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선을 채택하도록 하여 외형상으로는 대한해협의 영해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지만 외국선박, 특히 군함, 항공모함, 핵잠함 등의 통항과 관련하여서 대한해협이 국제해협인만큼 외국의 군함 등이 우리에게 사전통보 없이 통과할 수 있는 '통과통항권'을 누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한국일보 해설).

: 조선 95.9.15., 2면; 한국 95.9.15.,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5-2호(83면) 참조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①기탁금제도는 정치자금제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참여의 형태로 권장되어야 할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기탁금은 극히 형식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②후원금제도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해야 하며, ③정치자금 사용에 있어 정책개발비보다는 주로 사무당원들의 인건비와 같은 정상운영비에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깨끗한 정치를 위해 모든 정치인은 정치비용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객관적인 증명서를 첨부해 보고하도록 하고, 또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여당에 독점되는 기탁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김영래 아주대 정치학과 교수, 『정치개혁의 현실과 이상』 한국정치학회 정치포럼).
- 후원회구성에 있어서 모금한도액과 회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경

유착을 부추기고 있음(최한수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세계 95.11.24., 15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3면) · 제6호(68면) · 제8호(66~67면) · 제9호(86면) · 제11호(69~70면) · 제12호(69~70면) · 제13호(46~47면) · 제94-1호(48~49면) · 제94-4호(76면) · 제94-5호(87~88면) · 제95-2호(81~82면) 참조

○ 헌법 개정의견

- 국가의 의사결정은 민의의 본산인 국회에서 해야하고, 이를 위하여는 의회민주정치를 구현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의원내각제를 실시해야 함(김종필 자민련 총재).
- 현행 「헌법」도 상당부분 내각제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내각제 실시 이전이라도 내각제를 수용한 국정운용을 해야 함(김종필 자민련 총재).

: 서울 95.7.8., 1면; 조선 95.10.19., 2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호(50면) · 제95-2호(82면) · 제95-3호(81면) 참조

◎ 統一 · 外交 · 國防

○ PKO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PKO활동과 관련, 비전투요원 파견 ·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파병 · 파견된 요원의 시한연장 등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검토함(국방부).

: 경향 95.7.10., 2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42면) · 제1호(38~39면) 참조

○ 군인연금법 개정의견

- 소급재직기간에 대한 조치가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은 제7조에서 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군인연금법 제16조제4항에서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하사관급 이상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사병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상 법개정이 요구됨.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술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팔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16살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라 학교근처의 술집과 슈퍼, 식품점이나 식당에서 술을 파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주택가의 술집과 술 파는 곳을 강력하게 금지하며, 총무처에서는 매년 1월 20일을 금주의 날로 선포하기를 바람.

: 법제처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76면) · 제13호(51면) 참조

○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 귀화한 한국인이나 국내에서의 교육기간과 병역기간을 합친 기간이 6년이상이 되지 않은 자는 외무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격제한을 삭제하고, 외국인에게 뒤지지 않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를 외무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모색함(외무부).

: 경향 95.9.24.,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80면) 참조

◎ 內務 · 地方行政

○ 공무원연금법 개정의견

- 총무처와 공무원의 각출요율을 현행 5.5%에서 최대 7.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조정하되 96년에는 총무처와 공무원이 각각 6.5%씩 부담하도록 함(당정).

: 국민 95.9.18.,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54면) 참조

○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 현재 6급이상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하는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소방직 등 특정직도 일반 공무원처럼 4급이상으로 완화함(신한국당).

: 한국 95.7.17.,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88면) · 제94-5호(92~93면) · 제94-6호

(82~83면) 참조

○ 관변단체지원관련 입법의견

- 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의 관변단체는 그동안 국가발전에 기여해왔지만 96년부터는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들 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도록함.

: 한겨레 95.7.21., 21면

○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의견

- ①갈수록 미성년자의 탈선행위로 인한 범법사태가 늘어나고 있으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법령보다 형벌이 가벼워 이로 인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란주점이나 술집, 노래방 등은 물론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자기가 마시거나 피우려고 하는 만 20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고, ②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출입시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때 '1년이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 하던 것을 1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크게 강화함. ③미성년자에게 불량만화나 음란도서, 도화 등을 판매·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던 것을 '2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함(경찰청).

: 서울 95.7.29., 23면

○ 서울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서울에 대하여는 이 나라의 수도로서, 세계 유수의 대도시로서, 특별시의 위상에 걸맞는 「서울시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함(조순 서울시장).
- 「서울시특별법(가칭)」의 제정방향은 크게 자치권, 재정권, 행정운영권 등 3가지로 ①자치 특례는 조직과 인사, 자치법규 운용상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부처의 중복·중층감사를 없애고, ②재정 쪽은 절반 이상 국고로 귀속되거나 서울시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수도권과밀부담금 등의 배분제도와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지원규정을 고치고 지하철 등 '국가사업'에 가까운 건

설비용은 상당부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며, ③행정운영 면에서는 도로·교통·하수·도시계획·환경분야에 대한 시·구간 업무조정권이 부여되어야 함(서울시).

- 모든 지방정부가 모법의 틀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지방자치법」 자체를 고치는 것이 옳고, 현실적 개정이 어렵다면 우선 「서울시특별법(가칭)」의 제정만이라도 허용되어야 함(정세욱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 이미 여러 모로 우월한 서울이 특별법을 통해 별도 권한을 부여받으면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지금도 「지역균형발전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등 여러가지 자치단체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이 불합리하다면 일률 개정을 통해 공통적용되어야 함(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개발실장).
- 「서울시특별법(가칭)」의 주요골자인 ‘조직·인사 등에 대한 자율성 보장’의 경우 이를 서울시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면 다른 시도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임(김길홍 신한국당의원).
- 선진외국의 수도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특수한 행정상 재정상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가 없고,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서울 집중화 현상이 가속될 것임(정시채 신한국당의원).
- 서울시는 인사와 예산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확실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며, 수도로서의 서울시가 갖는 비중을 고려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김종완 민주당의원).
- 서울이 중앙정부의 각종 통제와 간섭 때문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박실 국민회의의원).
- 「서울시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으로 여타 시·도에 비해 여러 특례를 인정받고 있어서 「서울시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경우 서울시가 국가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김용태 내무부장관).

: 동아 95.9.2., 5면; 조선 95.10.4., 37면; 동아 95.10.11., 4면; 한국 95.10.13., 2면; 조선 95.10.4., 37면

○ 인위재난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인위재난관리법(가칭)」을 제정할 경우 비상재해업무가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대책법」과 인위적 재해를 대상으로 한 「인위재난관리법(가칭)」으로 이원화되므로 재고해야 함(국회 법제예산실).
- 자연재해는 「풍수해대책법」에서, 인위적인 재해는 「재난관리법」에서 다루고 있어서 재난은 인재만을 의미하고 자연재해는 재난이 아니라는 모순에 빠지게 되므로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같이 두 법규를 통합, 모든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김정근 서울 관악소방서장).

: 국민 95.7.13., 4면; 한국 95.8.29., 2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5-2호(85~86면) 참조

○ 자치경찰제도입관련 입법의견

- 경찰의 임무중 유흥업소·고물상의 허가, 자동차운전면허,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총포·화약류의 단속, 경비 등 지역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임무는 국가경찰이 맡는 것이 불합리하며 지방경찰이 담당해야 함. 자치경찰제에서는 경찰이 지방공무원이 되므로 시·도가 인사권을 갖게되며 서울로 영전될 수 없으므로 개인생활의 침해와 사회질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기능은 가장 신변가까이에서 수행돼야 하는 서비스행정이면서 권력적행정작용이기도 하므로 도리어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경찰은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함(정세욱 명지대교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 교통·방범 등의 부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경찰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조순 서울시장)
- 자치경찰을 도입하면 주민봉사적 경찰행정,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정균환 국민회의 의원).
- 자치단체가 치안까지 맡을 경우 파산할 우려가 있고, 자치경찰제는 지역토호와의 유착으로 비리척결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남평우·김형오 신한국당 의원).

- 분단상황,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 아직은 국가경찰제를 유지해야 함(박일룡 경찰청장).

: 중앙 95.9.30., 4면; 서울 95.10.11., 1면; 한국 95.10.12., 5면

○ 정부조직법 개정의견

- 종합적인 재난예방 및 구호기능을 담당할 '안전관리청(가칭)'을 신설하고, 식품안전관리와 의약품검사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의청으로 '식품·의약품관리청(가칭)'도 설치하기로 함(당정).

: 한국 95.7.11.,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77~78면) · 제12호(76면) · 제13호(57면) · 제94-2호(82면) · 제95-3호(85~86면) · 제94-6호(84면) 참조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①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자치단체간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강제 조정할 수 있도록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심의기능에서 의결기능으로 전환하며,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②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의 문제를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직속으로 중앙부처, 관계전문가, 법조인, 지방자치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③그동안은 정부부처 주관으로 권한이양을 추진해왔으나 인력과 예산을 동시 이양하지 못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으므로 관련법령을 개정, 권한이양을 전담할 상설기구로서 국무총리직속의 '지방자치제도 연구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추진하고자 함(김용태 내무부장관).

: 조선 95.7.21., 2면; 세계 95.7.21.,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49면) · 제13호(57~58면) · 제94-2호(82~83면) · 제95-2호(86~89면) 참조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개정의견

- 그동안 근거조항이 없어 단속하지 못했던 석궁과 공사용 못박기 총, 자동차 에

어백용 가스발생기 등 총포류와 살상력이 비슷하고 위협의 우려가 높은 장비들을 총포, 화약류에 포함시켜 제조 및 판매를 제한하도록 함(경찰청).

: 서울 95.7.29., 23면

- 개정법안 제18조에서는 '화약류는 사용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화약류 사용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이렇게 된다면 화약류양수허가등을 종전과 같이 관할경찰서에서 받아야 하므로 화약류사용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화약류 허가권을 기술사관 특정인에게 주어 그 특정인이 이권을 행사하게 되고, 제31조에서는 화약류 관리기술사의 의무에 화약류 제조 및 취급 전반에 관한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의 화약류관리 1·2급 기사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임.

: 법제처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48면) 참조

◎ 社會 · 教育 · 文化

○ 가정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책임주체가 되어야 하며 단순히 처벌법적 성격보다는 사회복지적 대책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하도록 하고, ②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전에 '가정보호처분제도'를 적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위탁 명령과 임시퇴거, 금전배상, 사회봉사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가정보호처분제도'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이 병행되어야 하며, ③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폭력도 함께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함(이찬진 변호사,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숍』, 가정폭력방지법 입법방향).
- 「가정폭력방지법(가칭)」의 목적은 '가정보호'를 통한 '사회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최소구성단위인 가정의 평화와 안정성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는데 두어야 하고, 처벌위주의 형사특별법적 입법은 지양해야 하며, 이에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과 시설운영 등 1차적 예방 피난처나 치료의 제공을 통한 2차적 예방

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과 국가나 지자체에 가칭 '가정보호국' 혹은 '가정보호과' 직제 설치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해야 할 것임. 가정폭력사건을 다루기 위해 경찰내 가정폭력전담 경찰관과 법원내 가정폭력전담부 운영이 필요함(이찬진 변호사, 국회 여성정책연구포럼 『가정폭력의 실상과 그 입법론』).

: 한겨레 95.7.23., 10면; 동아 95.10.26., 18면; 세계 95.10.26., 2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91면) 참조

○ 교육공무원법 개정의견

- 공립 초·중등 교원의 경우 정원조정권을 제외한 실질적 인사권을 시·도교육감이 행사하고 있고 공립학교가 이미 시·도립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지방화시대에 따른 초·중등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교원의 지방직 전환이 필요함(교육부).

: 중앙 95.8.4.,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5-3호(87~88면) 참조

○ 교육법 개정의견

- 96년부터 초·중·고교생 중 학업성적이 상위 1%이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국민학교 때 한차례, 중·고교 때 한차례 등 모두 두차례에 걸쳐 월반과 조기졸업을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성적과 개인지능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하도록 함(국무회의).
- ①법률 체계의 개정방향에 있어서 「교육법」, 「학교교육법(가칭)」, 「대학교육법(가칭)」으로 분리하거나 「교육기본법(가칭)」, 「학교교육법(가칭)」, 「대학교육법(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②법률내용의 개정에서 교육관계 당사자의 교육권 개념을 분명히 정립해 교육에 대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며 사회 발전을 주도할 국민교육을 실현하도록 해야 함(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 국가도 교사도 일정한 교육권의 주체임을 인정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중심적인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가 될 것이고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중심의 제도가 교육의 전분야에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학부모가 교육권의 중심적 주

체임을 「교육법」에 명시해야 함(양건 한양대 법학과 교수).

- 5세 조기 입학 허용에 있어서는 공사립유치원의 공교육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 부모들의 바른 유아교육관을 성립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 ①교육재정면에서 국민총생산(GNP)의 3.6%선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5%선까지 확보하고 전체 교육재정중 지방자치단체가 기여하는 몫을 지금의 17%선에서 크게 늘려야하며, ②교육개혁위원회의 위상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의 교육관련 분과위원회로 개편,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교육예산안을 광역의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양자의 갈등을 줄이고, 교육위원 선출방법도 광역의회의원과 일정한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을 갖춘 교육위원으로 절반씩 구성해 주민대표성에 따른 시비를 줄이되,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위원의 선출은 학교운영위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중에서 광역의회가 뽑도록 하고, ③교육감 선출방식에 있어서는 각시도의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교육감이 시도의 전체 재정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교육감 선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정한 역할이 보장되어야 함(교육개혁위원회).
- 교육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①현재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에 관한 심의·의결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즉,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교육분과특별위원회 형태로 하고 위원의 절반은 시·도의원이 겸직하며 나머지는 교육전문가 중에서 선임하여 구성하고, ②교육위원회와 교육감으로 나누어진 교육에 관한 의결과 집행기능을 통합하여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운영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일원이 되며 사무총장의 기능을 수행하게 함(김태완 계명대 교육학 교수).
- 교육개혁위원회는 시·도의원을 일정 비율의 교육위원으로 선출,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지만, 시·도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점은 교육의 정치적중립이라는 헌법 이념을 무시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음(서울신문 해설).
- 정당 배경을 가진 의원들이 교육·학예에 관여하게 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어렵고 교육자치가 일반 지방자치에 흡수·통합되어 교육의 특수성

에 기초한 교육운영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김명한 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 시·도 의원이 교육위원으로 된다 하더라도 구성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별 재정규모의 차이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도위원의 교육위원 겸직안에 반대함(한환경기도 교육감).

: 중앙 95.8.23., 2면; 동아 95.9.11., 7면; 동아 95.9.28., 23면; 동아 95.7.31.,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61면) · 제8호(76면) · 제11호(81면) · 제94-1호(54~55면) 참조

○ 근로자파견관련 입법의견

- 근로자 파견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합법화를 적극 검토중임(이상득 신한국당 제2조정위원장).

- 근로자 파견 관련법의 입법은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것임(노동계).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인력 및 일시적인 노동력을 인력전문회사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 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로자 파견제도 등 근로자 고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둠(진념 노동부장관).

: 한겨레 95.9.22., 3면; 서울 95.9.14.,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5~76면) · 제8호(78면) · 제10호(85면) · 제11호(81~83면) · 제12호(78~79면) · 제95-2호(90~91면) 참조

○ 기능대학법개정안관련 입법의견

- 개정안의 내용중 기능대학 설립자의 확대에 대하여 현행의 각종 기술훈련 및 교육기관에서 배출하고 있는 기술인력으로도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다기능기술자를 충분히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며, 기능대학 졸업자의 전문대학 학력인정에 대하여는 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이 교육과 훈련의 목적·설치기준·교수의 자격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부당하므로 반대함.

: 법제처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의견

- 「한국조폐공사법」을 개정하여 조폐사업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근로자의 파업을 원천적으로 막고, 조폐공사의 임원뿐 아니라 직원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화폐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관책임자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함(재정경제원).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는 공익사업을 지하철·철도·버스 등의 공중운수사업과 수도·전기·가스·정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사업, 방송·통신산업 등 5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폐사업을 새로 공익사업에 포함시키려면 법개정이 필요한데도 특별법에 따로 지정한다는 것은 노동관계법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임(노동부).

: 동아 95.9.19., 13면; 한겨레 95.9.25.,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6~77면) 참조

○ 노인복지관련 입법의견

- 노인복지정책은 현재의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모든 소득계층노인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최저생활의 보장을, 건강하고 수입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취업의 장을, 수입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활력있는 노년기를 보내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건강하지 못한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는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이가옥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교수).

: 세계 95.9.29., 15면

○ 대학원 교육개혁관련 입법의견

- ①대학원의 최소수업연한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은 4년(석사과정 포함)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학장이 수업연한을 6개월 감축할 수 있게하고 대학졸업후 박사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며, 석사학위를 받지 않고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현재 대학졸업후 박사학위까지 적어도 5년(석사과정 2년, 박사학위 3년) 이상 걸리던 것이 3년 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게 하고,

②대학원의 종류도 현행 일반 및 특수대학원 외에 전문대학원을 추가 3개 유형으로 특성화해 일반대학원은 학문중심으로 학자를, 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의사 등 전문인력을 각각 양성하도록 하고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및 일반인의 재교육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③정보통신·통상외교 등 세계화·정보화 추세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과정없는 별도의 단설 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권한은 우선 학교법인으로 한정하도록 함. ④종전 구분없이 수여되던 석·박사 학위도 이원화해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술학위를, 특수대학원은 전문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⑤대학원 정원 개념을 현재 재적생(재학생+휴학생) 개념에서 재학생 개념으로 바꿔 휴학생 수만큼 추가모집할 수 있도록 함(교육부).

: 국민 95.8.21., 23면

○ 방송법 개정의견

- ①국내 기업이 직접 위성체를 발사, 방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중파방송의 참여를 금지했던 언론사와 대기업의 케이블·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며, ②기존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를 합친 '통합방송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위원회 위원 12명은 현행 방송위원과 같이 입법·사법·행정 3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송사업자 허가 및 승인에 의견제시, 방송 프로그램 분야별 편성기준 및 재난방송 기준의 제정, 유료방송의 약관승인 등에 관해 구체적 권한을 갖도록 함. ③방송국 허가는 공보처 추천·정보통신부 허가라는 현행방식을 유지하되 방송사업자 개념을 도입해 무선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시설 없이도 공보처 승인을 얻어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④공보처, 정보통신부 등 방송유관 부처간의 업무중복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발전정책협의회를 설치, 해당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게 하며, ⑤위성방송의 편성은 가능한 한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종합편성 전문편성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방송사업자개념을 도입해 지상파방송·위성방송 등 무선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시설 없이도 공보처의 승인을 얻어 방송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현행 '특수방송' 개념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편성방송' 개념을 도입함(공보처).

- 방송개발원과 언론연구원을 신문방송연구원으로 통합하고, 분산돼 있는 방송 소프트웨어 관장기능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총리실 주관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방송계·학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선진국방송위원회'를 운영함(서울신문 해설).
- 「방송법」에는 정부·자치단체·종교법인 등에 한해 특수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개정될 「통합방송법(가칭)」에 전문편성 개념을 삽입하고자 함(공보처).
- 지역라디오가 지방자치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려면 정부의 일방적 허가제도가 폐지되고 프로그램 편성비율도 중앙정부가 관장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에 맡겨야 하며, 위성방송 정착 기간을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기존 방송사에 허가한 시험방송 외에는 대표성 있는 전문적 정책기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임(김학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통합방송법(가칭)」이 먼저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방송을 총괄할 기구로서의 통합방송위원회가 방송을 총괄할 수 있도록 권한과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먼저 통합방송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을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이에는 통합방송위원회에 독립적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방송전문가).
- 「방송법」에는 방송국이 무선국으로, 방송법인은 방송국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방송시설이 없는 방송국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방송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달하는 추세여서, 방송프로그램 공급만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국이 늘어날 전망이므로 '전문프로그램공급자' 내지 '방송사업자' 개념을 도입해야 함(황근 한국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
- 인사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해서는 방송사 사장 임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방식부터 개정하여야 하고 △이에는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 존경받는 각계 명망인사 15인으로 추천인단을 구성해 △방송위원 후보를 뽑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공개적인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적합한 인사를 선임한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사 사장들은 방송공사와 방문진 이사회가 각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방송사 노조).
- 대기업의 기업독점이 심화돼 있어 재벌의 위성방송 참여로 정보산업까지 장악

하게 된다면 모든 정책이 기업을 옹호하는 쪽으로 결정될 것이고, 언론사들에 전문편성채널을 허가해도 이들은 조금씩 뉴스보도를 해나갈 것이고 그 결과 거대언론이 여론을 좌지우지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한 정보·의견이 원천 봉쇄될 것임(유재천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세계무역기구가입에 따라 오는 97년이면 외국기업에 15%의 지분참여를 허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외국기업에는 차별없이 지분을 내주면서 국내 대기업·언론사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모순임(서종환 공보처 신문방송국장, 『방송법 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 대기업·신문사의 경우 비보도채널에는 컨소시엄 형태로, 보도채널에는 컨소시엄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제한적 형태로 참여를 허용하도록 함(방송위원회 산하 위성방송연구위원회).
- 현행 방송위원회 대신 방송자유위원회를 설치하여 직능대표 11명, 지역대표 7명, 전문가 7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하고, 방송사 허가 및 재허가권·방송심의권·방송재원조성권을 갖도록 해야하고, 방송광고공사는 폐지하며 광고영업권은 방송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별도 기구에서 관리하고, 공익자금은 방송자유위원회 관리하에 방송발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 기존 「방송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11개에 불과했으나 「방송법」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넘긴 항목이 무려 41군데나 되는 등 너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함(박계동 민주당 의원).
- 방송국의 허가요건, 방송사 소유지분 등에 관한 조항에는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고, 언론사의 종합유선방송국 참여제한 비율을 종합편성사업자의 지분참여 제한을 준용해 1백분의 30으로 명시해야 하며, 외국정부나 외국인의 방송 참여 제한 비율, 종합유선방송국의 경영 제한 비율 등도 최대치를 방송법 모법에 적시해 매체독점 방지와 외국자본의 국내방송 진출 견제 정신을 담아야 함(박종웅 신한국당 의원).
- 개정 「방송법」에는 ①공보처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보국으로 직제를 조정하고, ②방송위원회 위원선임방식은 국회 원내교섭단체간의 합의하에 명망있는 인사 10명으로 추천인단을 구성한 뒤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해 15명을 선임하며, ③방송위의 방송프로그램 심의권을 폐지하는 대신, 방송사간의

자율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언론사 및 재벌의 방송사업진출을 당분간 금지하며,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함(『민주적인 방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새정치국민회의 주최).

: 조선 95.9.29., 18면; 서울 95. 7.15., 13면; 한겨레 95.7.19., 16면; 한겨레 95.8.2., 16면; 한겨레 95.9.27., 16면; 한국 95.9.28., 24면; 한겨레 95. 10.11., 17면; 세계 95.10.29., 1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3호(64면) · 제94-1호(58~59면) · 제94-2호(89~90면) · 제94-4호(79~80면) · 제94-5호(100~101면) 참조

○ 시간제근로자고용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주부 · 고령자 등 잠재인력을 시간제 근로자로 활용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노동부).
- 산업계의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점차 늘고 있는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의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시간제근로자의고용관리에 관한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함(진념 노동부장관).

: 한겨레 95.9.14., 2면; 서울 95.9.14., 1면

○ 여론조사관련법(가칭) 제정의견

- 여론조사가 여론을 오도하고 왜곡시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으므로 여론조사연구협회를 민간중심으로 만들어 공정한 여론조사를 감시하고, 조사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사전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오인환 공보처장관).

: 세계 95.7.9., 6면

○ 외국인근로자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취업 또는 산업기술연수생 등 형태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함에 따라 96년 상반기중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이에는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고용 허가를 받은 뒤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수입하도록 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비자로 국내노동허가를 대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노동부).

- 우리의 산업계 현실이나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상황을 볼 때 외국인근로자 수는 앞으로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외국노동력을 수입하는 선진공업국이나 선발개도국들은 나름대로의 법과 제도로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되 그때 그때의 인력수급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운용을 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현실을 외면한채 외국인근로자를 편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이 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국인 취업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도입이 바람직함(세계일보 사설).

: 중앙 95.9.16., 1면; 세계 95.9.17., 3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5-1호(87~88면) · 제95-2호(93면) · 제95-3호(90~91면) 참조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개정안관련 입법의견

- 영상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영상관련법체계를 고치기 위해 위헌논란을 빚고 있는 음반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수입허가제를 추천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며, CD-ROM, CD-I, ROM-PACK 등 새 영상물을 포함한 비디오물 개념을 재정립함(신한국당).
- 개정안은 사업자 등록 · 부담금 징수 · 내용물의 사전심의 등 많은 규제로 국가적 유망분야인 정보산업의 발전을 저해함(이룸대 정보산업연합회장).
- 윤리성 심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을 한정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멀티미디어매체가 무차별적으로 규제법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돼 국내 정보산업이 싹이 트기도 전에 큰 피해를 보게됨(소프트웨어업계).
- 청소년을 위해서나 새 영상산업의 건전육성을 위해서도 여과장치는 꼭 필요함(중앙일보 사설).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개정안은 사전에 검열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국제적인 추세와 기술의 발전방향과는 배치되어 재개정이 요망됨(한봉희 변호사).

: 조선 95.8.30., 2면; 중앙 95.8.30., 27면; 중앙 95.9.1., 5면; 한겨레 95.10.25., 2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6호(93면) · 제95-2호(93~95면) 참조

○ 의료보험법 개정의견

- 전투나 공무집행 도중 부상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요양을 계속 받아야 하고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노인이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연중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보건복지부).

: 동아 95.7.14., 29면

○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의견

- 종합유선방송국 채널 편성권 부여와 관련하여 케이블방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프로그램공급사에 부여된 편성권을 유선방송국에 넘겨주는 것으로 함(정보통신부).
- 유선방송국이 채널 선정권을 갖도록 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의 수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이상식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연구위원).
- 원칙적으로 종합유선방송국 채널 편성권 부여에 동의하나 유선방송국에 편성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시기는 가입가구수가 충분히 늘어난 시점이 적절함(성열홍 큐채널 편성부국장).
- 프로그램공급사 설립 신고제와 관련하여 프로그램공급사의 프로그램 공급 범위는 케이블 TV에 묶어두지 말고 지역민방·위성방송 등으로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 교수).
- 대기업·언론사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케이블 TV사업을 활성화하려면 기존 유선방송국에 추가지역 사업권을 부여해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를 줄여야 할 것임(유재홍 서초종합유선방송국 부사장).

: 한겨레 95.7.12., 1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1면(61면)·제94-3호(99면)

○ 청소년유해간행물의유통규제에관한법(가칭) 제정의견

- 유해출판물을 막기 위해 만화물에 대한 사전심의, 청소년 유해간행물에 대한 표시의무 및 포장판매의무 부과, 청소년 유해간행물의 가두 자동판매기 우편,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청소년유해간행물의유통규제에관한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함(당정).

:동아 95.9.18, 2면

○ 학교용지확보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신도시의 경우 초·중학교 터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의 범위 안에서 기부채납하도록 돼있는 것을 개발이익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조성원가로 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하게 돼있는 고교터는 조성원가의 70%로 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하도록 하며, 택지개발지역의 경우 현재 국교는 조성원가의 70%로, 중·고교는 조성원가로 각각 공급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초·중학교 터는 무상으로, 고교 터는 조성원가의 70%로 5년간 무이자 분납하도록 함(교육부).

: 한겨레 95.8.31., 22면

◎ 産業 · 經濟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수도권 성장관리 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전자변성기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유선통신 장치 제조업 △무선통신장치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축전기제조업 등 7개업종 가운데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 제조업은 제외하는 대신 △자동차 △전동차 △반도체 부품 등 3개 업종을 새로 포함함(통상산업부).

: 중앙 95.7.4., 2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2호(94~95면) · 제94-3호(100면) · 제95-2호(95면) 참조

○ 관세법 개정의견

- ①96년부터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했다가 수리·가공을 위해 다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 통관에 대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시험·검사·연구용품의 경우 수입한지 2년 안에 수출하면 관세를 물지 않도록 하며, ②선하증권과 수입신고서중 하나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간이신고대상물품의 과세가격 기준을 △소액 면세대상 물

품의 경우 현재 7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 2백달러 이하에서 50만원(6백달러 상당) 이하로 각각 확대함. ③수입통과된 화물은 일정기간(10일이 유력)안에 내가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고, ④통관을 위해 수입예정신고와 본신고를 통합해 한번만 내도록 하며,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할 때 지금은 세관장의 반입허가와 해당물품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관세청과 협의해 둘중 하나를 없애기로 함. ⑤물건을 만들어 종합상사에 제공하는 완제품 공급자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고도기술용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경우 소프트웨어협회 한곳의 추천만으로 관세감면이 가능하게 함(재정경제원).

- 물품이 입항, 하역돼 보세구역에 반입된 뒤 하게 돼 있는 수입신고는 입항 전 또는 입항 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경우 부두에서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반출할 수 있게 하여, 물류적체의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관세 사후 납부제'도 도입,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가 없을 경우에도 신용도에 따라 물품을 반출한 뒤 관세를 물도록 수입 및 납세절차를 분리함(재정경제원).

: 중앙 95.7.22., 26면; 서울 95.9.5., 1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4면) · 제6호(79면) · 제7호(64면) · 제8호(89면) 참조

○ 국제영업활동지원법(가칭) 제정의견

- ①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 장기거주하면서 연구활동 및 기술이전 등을 할 △박사급 학력자 또는 과학자 · 변호사 · 회계사 · 경제경영 전문가 · 의사, △석사이상의 기술자, △주무장관이 추천한 사람과 같은 외국인 고급두뇌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서는 특별 신분증인 '그린카드'를 발급, 이들의 국내 거주에 있어 화교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 고급두뇌의 경우 현재 18년으로 돼 있는 체류 상한 폐지, 영구 체류를 허용하되 3년마다 한번씩 기한 연장 절차를 밟도록 하고, ②부동산 보유에 있어서는 앞으로 2백평 이내의 1가구 1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하고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③의료보험이나 우량저축상품 가입, 근로소득 해외송금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④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입은행, 산업기술정보원 등에서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제영업환경 및 동향 외국기업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함(통상산업부).
: 서울 95.8.29., 17면; 동아 95.9.5., 13면

○ 대외무역법 개정의견

- ①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수출입 승인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고쳐 법규에 정한 품목외에는 자유롭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수입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서의 오퍼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같은 규제를 없애기로 하며, ②무역업과 관련, 제한없이 수출입업을 할 수 있는 갑류와 자가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만을 수출입하는 을류로 나뉘어 있으나 이를 통합해 제한없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③산업피해구제제도를 개선,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에 대한 조사기능 등을 모두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함(통상산업부).

: 중앙 95.9.6., 2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0면) · 제11호(88면) 참조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통신판매방식을 통해 구입한 상품이라도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를 때, 주문상품이 지연도착하는 때에는 해당 상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함(통상산업부).

: 서울 95.7.29., 1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2면) · 제94-3호(100~101면) · 제94-4호(85~86면) 참조

○ 부가가치세법 개정의견

- 부가세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제조치를 일부 생필품과 문화용역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모두 과세해야 함(유시권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광복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 “부가가치세제의 발전과 정책과제”).

: 한국 95.9.21., 9면

○ 상표법 개정의견

- 「상표법」은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만 인정하고 있으나 색채상표권을 도입하여 색채를 결합한 것까지 상표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함(특허청).

: 국민 95.8.28.,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4호(88면) 참조

○ 세법관련 입법의견

- ①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단자사의 기업어음(CP)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97년부터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팔면 등기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며, ③96년 7월부터 담배에 갑당 1백84원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에 물리는 특별소비세의 20%를 교육세로 추가할 방침이고, ④서화·골동품과 산업재산권 및 영업권(권리금) 등의 양도차익은 세법상 '일시소득'이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임(재정경제원).
-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 일방적으로 과세자 편의주의대로 대부분의 세법과 행정이 이루어져 납세자들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권리장전(가칭)」 제정이 필요하고, 납세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조세구제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방에도 국세심판소를 설치하고 조세법원도 신설해 납세자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도록 함(이우택 한양대 교수).
- ①유선방송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조세감면대상 지식서비스산업범주에 포함, 법인세의 20%를 특별공제해 주고 창업시 취득·등록·법인·소득세 등을 감면해 줄 방침이고, 3년 이상 운영했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며, ②학교,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보훈복지공단 등이 일정기간 고유목적에 사용

했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기준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한편 비영리법인은 현행 2에서 3년으로 늘려 면제조건을 통일함.
③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공공법인에 포함, 기부금, 수익금, 토지처분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함(재정경제원).

: 한국 95.9.21., 9면; 한국 95.9.24., 9면; 중앙 95.9.2., 2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52면) · 제11호(88~89면) · 제94-1호(68면) · 제94-3호(101면) · 제94-5호(108~110면) · 제94-6호(97면) · 제95-1호(91면) · 제95-3호(92~93면) 참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①약관심사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심사기관이 해야하는 데 은행감독원이나 인가관청은 약관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②약관심사는 중립성을 지닌 기관이 해야 하는데 은행감독원과 인가관청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온정적인 것이 보통이며, ③약관심사는 사후심사제도이므로 사전심사기관과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데도 은행감독원이나 인가관청은 심사대상약관의 작성에 관여했으므로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 시장개방에 대비해 서비스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약관규제를 효율적으로 하고, 약관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행정규제를 강화해 기업의 창의력을 약화시키므로 피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에 대한 사후심사제도를 잘 운영하도록 제도와 인적 구성, 절차 등을 정비해야 함(이은영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자문위원).

- 약관심사는 전문성을 갖추고 중립성을 지닌 기관이 해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금융·보험약관 심사를 직접 관장하도록 해야 함(신용묵 한국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국 약관팀장).

: 세계 95.8.25., 14면; 중앙 95.8.16., 2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58면) · 제94-6호(98면) 참조

○ 의장법 개정의견

- 의장은 물품의 외관을 위주로 해 모방하기 쉬운 데다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현재 14개월쯤 걸리는 심사기간이 지나 등록될 때 썸이면 상품의

생명이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장출원자가 요청하면 아직 의장권이 설정되지 않은 출원내용을 미리 공개하여 공개된 의장에 대해 모방·도용행위가 있으면 의장등록된 뒤 소급해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특허청).

- ①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기본법인 「의장법」을 국제환경에 맞게 제대로 개정하고, ②의장등록대상을 활자서체, 그래픽 심볼 등 기존의 디자인개념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에까지 확대하며, ③의장출원 및 등록때 과도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의장 일출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의장권리존속기간은 의장의 성격에 따라서 보호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세계일보 기획·연재).

- ①우선 산업디자인은 제품의 외관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어서 단순히 모방금지권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고, 누구나 쉽게 모방할 수 있어 그 진위를 판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며, 제품의 수명도 다양해 그 보호기간을 지적재산권에서 처럼 50년, 혹은 특허권에서처럼 15년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음. ②의장권을 얻는 출원비가 너무 비싸서 의장권의 경우 실체심사가 아닌 방식심사로 전환하고 모방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고, ③신규성 인정문제에 있어서는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타당함(김창세 박사,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세계 95.9.5., 21면; 세계 95.9.8., 1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5-2호(104면) 참조

○ 인삼사업법 개정의견

- 「인삼사업법」 개정안 제4조(경작지정 및 신고)에서는 5년근 이상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경작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굳이 5년근으로 표기검사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지정이라는 절차를 강요하여 불편을 줄 수 없으므로 '국정검사를 통한 연금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만으로 한정할 것을 요망함.

: 법제처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5-1호(91면)

○ 제조물책임법(가칭) 제정의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기업들의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제조물 배상책임(PL : Product Liability)제도를 도입함. PL제도의 적용대상은 가전제품·자동차·완구 등 소비재 공산품과 부실공사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아파트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기업들에 추가적 비용부담을 안겨준다는 점을 감안, 제조회사의 면책조항을 늘리는 등 선진국보다 배상책임을 다소 가볍게 정하도록 함(재정경제원).

: 중앙 95.8.9., 26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102~103면) 참조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투자금융사와 종합금융사의 업무를 통합하여 투금사를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도록 하고, 종금사로 전환하는 투금사와 기존의 종합금융회사는 반드시 증자를 통해 납입자본금을 최소한 3백억원이상으로 늘리도록 의무화하며, 현재 서울지역 8개 투금사가 해오고 있는 콜중개업무는 따로 떼어내 2개이상의 콜거래중개회사를 설립, 전담시키기로 함(재정경제원).

: 세계 95.8.30., 8면

○ 중소기업자지원을위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소규모 도·소매업자나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사업자 사업전환 지원 △재래시장과 소규모점포 지원 △중소사업자의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탄력)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함(통상산업부).
-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및 창업촉진을 위해 비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유통·물류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감면·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과 물류 및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함(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 한겨레 95.9.14., 9면;

○ 통계법 개정의견

- 통계작성 업무담당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 또는 단체 등 비밀을 누설하거나, 통계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사람은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함(통계청).

: 조선 95.9.14., 8면

○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폐광지역을 관광특구로 개발하기 위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의 설치를 허용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함(통산산업부).

: 서울 95.7.25.,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5-2호(105면)

○ 한국은행법 개정의견

-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집행부, 은행감독원을 내부기구로 하여 통화금융정책의 의결·집행·감독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 기구여야 하고, 총재는 임기중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②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한은총재가 맡고 위원은 총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재정정책의 담당부서인 재정경제원의 인사관여를 배제하고, ③외환업무도 통화금융정책에 영향이 지대하므로 그 관할권한을 한국은행에 주어야 하고, 은행감독원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지식통제권을 폐지하여 관치금융의 통로를 차단하며, ④특수은행 및 제2금융권에 대한 통화관리 통제권도 한국은행이 갖도록 하여 총괄적인 통화금융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함(이필상 고려대 교수).

: 세계 95.8.11., 1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01면) · 제94-5호(117면) · 제94-6호(102면) · 제95-1호(93면) · 제95-2호(105~108면) 참조

◎ 農林·水産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부칙 제2항에

의거 전용된 농지로서 개정된 법률시행일('93.12.24) 현재 절대농지는 5년, 상대농지는 3년이 경과한 경우만 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농지 전용후 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동법시행령 제59조(타목적 제한)에 의거 소급하여 8년간 타목적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93.12.24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59조 개정이전에 허가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후 허가한 건만 현행 규정대로 8년으로 적용함이 행정의 신뢰제고 및 주민 위주의 행정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임.

: 법제처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3호(106~107면) 참조

○ 농지법·농지법시행령 개정의견

- 농지매매를 지나치게 엄격히 규제,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농지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주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이 요망되며, 농지매입자격, 매입한도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신한국당).
- ①96년부터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도 최소한 연간 45일 이상 본인(가족포함)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농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고, 꼭 45일이 아니더라도 주요 농산물의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참여하면 같은 대우를 받게 하며, ②농촌을 떠나거나 나이가 많아 농지를 팔 경우 각 시·군·읍·면에 설치돼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③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농업보호구역에는 1천5백평방미터(약 4백55평)이상의 공장, 3천평방미터를 넘는 주택단지, 1천평방미터를 넘는 숙박·위락시설 등의 시설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함(농림수산부).
- 농지소유의 자유화와 비거주영농 허용과 관련하여 농지법시행령에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실제로 영농에 참여하도록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또는 45일의 영농참여일' 중에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도록 함(농림수산부).
- 농지소유의 자유화로 구입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농지의 환금성이 쉬워지고 농지가격도 강세를 보이게 되므로 농민들은 이를 원하고 있는데, 농지매매가 활성화되면 농지소유가 집단화되어 기계화에 의한 대규모영농도 가능해 질 것 이나, 장래에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소유만 하고 농지를 늘리는 등 악

용될 소지도 없지 않으므로 농작업참여기간의 설정은 꼭 필요함(강정일 농촌경제연구소 부원장).

- 현재 토지이용도 비생산적·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한번 파괴되면 복구가 안되는 것이 토지이므로 개발에 신중해야 하며 농사 지을 의사가 있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영농참여기간을 4개월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할 것임(김동희 단국대 교수).

: 한국 95.7.17., 2면; 중앙 95.8.28., 2면; 세계 95.10.13., 1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1호(91~93면) 참조

◎ 建設

○ 건설업법 개정의견

-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도를 확대하기로 함(행정쇄신위원회).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67~68면)·제9호(103~104면)·제12호(94~95면)·제95-1호(93면)·제95-3호(99면) 참조

○ 건축법시행령 개정의견

- 사진처리업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동일한 구청내에서도 환경과와 건축과에서는 공장으로, 산업과에서는 공장이 아니라고 계속 분쟁이 야기되고 있고, 통상산업부 공문에서는 사진처리업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반면 건설교통부 공문에서는 공장에 해석함으로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건축법시행령」이 상호 충돌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제65조 별표와 관련하여 구법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필립현상'을 도시형 업종으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을 요함.

: 법제처입법의견신고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05~106면)·제95-2호(109면) 참조

○ 국토이용관리법·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①「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운동휴양·집단묘지·시설용지지구 등 4개로만 구분된 준도시지역 용도지구에 '농어촌산업지구'를 신설, 준농림지에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산업지구로 지정된 준농림지는 국토이용계획이 적용되는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어 공장설치가 가능하게 함. ②농어촌산업지구에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를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으며, 농어촌산업지구와 시설용지지구에 들어서는 산업시설은 현재 15만m²까지인 면적제한규정을 폐지, 대규모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하며, ③준농림지역에 자동차정비시설과 수질오염도가 낮은 고체성화학제품공장, 제지공장, 출판 및 인쇄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함(건설교통부).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땅을 사기 위해 허가신청서를 낼 때 지금까지는 허가 담당 부서(지적과 토지관리계 등)를 거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의 민원 창구에 바로 내게 하고, 주택용 토지를 살 때도 지금까지는 반드시 주민등록이 이전돼야만 허가해줬으나 앞으로는 거주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으면 허가해 주고,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살 때도 농지매매증명이 없거나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농업이 가능하면 허가를 내주기로 함(건설교통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도 개선안』).

: 조선 95.7.6., 11면; 중앙 95.8.26., 2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2면)·제3호(66~67면)·제7호(68면)·제8호(106~107면)·제10호(94~95면)·제12호(96면)·제94-4호(121면)·제95-1호(94면) 참조

○ 유료도로법(가칭) 제정의견

- 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도로(지방도)나 터널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통행료 조정권도 갖게 함(건설교통부).

: 중앙 95.7.12., 25면

○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의견

- 도심·부도심지역 등 특정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현재는 몇대 이상 규

모로 짓도록 하한선을 두고있으나 도심내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차상한제'를 도입함(서울시).

-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정비한 뒤 일정 주차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한해 주차공간을 지정, 해당 차량만 주차하도록 함(제타릉 서울시교통국장).

: 세계 95.9.21., 31면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의견

- 현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된 내부구조 변경과 관련, 안전에 영향을 주는 내력구조부를 철거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형을 추가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인테리어업체 등 시공업자도 처벌하도록 함(건설교통부).

: 동아 95.8.4., 3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36면) · 제12호(100면) · 제94-2호(109면) 참조

○ 풍수해대책법 개정의견

- 어민들에 대한 보상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적조피해의 지원기준을 조정하고, 오염이 심하거나 수자원보호가 필요한 수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방안을 강구함(박광훈 수산청장).

: 경향 95.9.30., 2면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 교통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인 '교통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자동차관련 세제개편에 있어서 주행세는 현행 취득·보유과세 중심에서 운행과세중심체제로 전환하며, 주행세를 도입할 경우 물류운송비용의 증가로 원가부담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임으로 현재의 유류특별소비세인 교통세를 인상하는 방안과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임(이승윤 신한국당 정책위의장).

: 동아 95.8.19.,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5-1호(95면) 참조

○ 국유철도경영개선을위한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철도청 공사화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철도청에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고, 비용이 수익의 2.5배가 넘는 적자 노선과 적자 역은 단계적으로 없애는 대신 전용버스를 운행하며, 책임경영제 도입을 위해 직급별 총정원 안에서 직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자율권을 주고, 철도운임이나 철도자산 임대료도 철도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관계부처 차관회의).

: 한겨레 95.9.7., 2면

○ 기상업무법 개정의견

- 기상업무가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산업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날로 폭증하고 있어 민간참여 허용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지금까지 기상청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기상예보업무를 일정자격을 갖춘 일반인에게도 허용, 회사설립을 통해 기상정보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필요로 할 경우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사업자의 사업범위는 무작위 일반인이 아닌 특정기업군·특정계층 등으로 한정하며, 기상청은 공공기관 및 민간인에게 기상청의 관측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상청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기상청).

: 중앙 95.8.28., 2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4호(94면) 참조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민원업무 등에 전자문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위·변조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정보통신부).

: 조선 95.8.26., 13면

○ 지식산업육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지식산업육성심의회'를 설치, 지식산업 시책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

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국회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총괄소위).

: 조선 95.9.23., 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5-1호(96면) · 제94-5호(124면) 참조

○ 해운법 개정의견

- 최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된 「해운법」개정안 제38조제2항은 사업자단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의 뜻에 반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켜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운조합법개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함(공정거래위원회).
- 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조합이 조합원의 뜻에 반하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해운조합법」이 경쟁제한적인 조항을 갖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제시는 확대해석임(건설교통부 관계자).

: 세계 95.2.4., 7면

◎ 環境 · 保健

○ 식품 · 의약품안전관리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식품과 의약품의 관련업무가 여러갈래로 분산돼 있고 개방화와 함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들의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를 통괄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국립보건안전연구원, 국립보건원 등 식품의약품안전관련조직을 전면 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수준의 식품의약품관리청을 보건복지부 외청으로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는 식품, 의약품, 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담당부서 및 관련 검사센터와 함께 6대 주요 항구에 수입 식품 검사업무만을 전담하는 수입식품검사소를 두며, 식 · 의약품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식품안전감독관을 각각 두고, 그 밑에 모두 8백1천명의 감독요원(식품경찰)을 두며,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기준 규격의 제정과 관리, 인허가 및 인증업무, 수입식품허가 부정불량식품 조사 ·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보건복지부).

: 동아 95.8.21., 2면; 중앙 95.8.25., 21면

○ 식품위생법 개정의견

- 치안, 청소년범죄, 과소비풍조, 산업인력의 수급 등 현실적으로 심야영업규제가 필요한 요인은 있으나 이런 부작용은 정책이나 행정의 융통성으로 보이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선진국형 정치며 행정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규제완화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임(세계일보 사설).

: 세계 95.9.16., 3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70~71면) · 제94-2호(112면) · 제95-1호(97~98면) · 제95-3호(104면) 참조

○ 연안역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연안역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해서 현재 10개부처로 분산돼 관리되고 있는 연안역관리업무를 통합하고, 전국 연안역의 생태계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뒤 보존 및 개발지구 등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지구지정제도를 도입함(건설교통부).

: 세계 95.7.21., 9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6~57면) 참조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토양오염유발 가능성이 높은 시설로 전국의 정유공장 및 저장용량 2만 l 이상 유류저장시설, 유독물질제조 및 저장시설, 폐금속광산 등을 지정, 이들 시설 소유주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기름탱크 아래 등 시설내의 토양오염도를 조사, 각 시도에 신고해야 하며, 이들 시설을 새로 개업하거나 사용종료 폐쇄·이전·양도·임대·처분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들 시설에는 반드시 오염물질 누출추정기를 설치해야 하며, 지역의 토양오염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토양환경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 추가 오염유발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신규설치를 제한하도록 함(환경부).

: 동아 95.9.18., 31면

○ 지역별의료기관개설허가제한등에관한규칙 개정의견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지역보건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내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있을 경우 그중 하나를 중앙보건소로 지정하고, 보건소의 진료기능 등 일부 업무를 민간의료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보건복지부).

: 한국 95.9.19., 33면

○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의견

- 쓰레기, 핵폐기장 등 환경오염 피해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발생한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씨 프린스호와 같은 대형유류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름유출량과 관계없이 해양경찰청이 방제업무를 전담하고 해역청소 등 일상적 수질개선은 각 해역관리청이 담당하도록 함(당정).

: 국민 95.9.20., 1면

◎ 法院 · 法務

○ 5.18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①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②현재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재정신청제도를 시급히 확대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검찰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해야 함(대한변협).
- 5.18특별법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가칭)」,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가칭)」, 「헌법과피범죄등의공소시효에관한법률(가칭)」등 3가지로 「5.18특별법(가칭)」은 특별검사 9인을 임명, 광주민주화운동 탄압과 권력찬탈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소추를 담당하도록 하고, 특별검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상규명과 수사·소추를 완료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수석특별검사가 대통령과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 그 사유를 보

고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89년 12월 12일
 이나 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범죄행위 종료시점부터 6공화국이 종료되는
 93년 2월 24일까지로 규정해야 하고,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죄확정자에 대한 특별재심을 허용하며 △정부에 기념사업을 건
 의하는 등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②「특별검사
 의임명등에관한법률(가칭)」은 국회가 국정감사·국정조사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요구한 권력형 부정사건과 법률이 특별히 정한 사
 건 등에 대해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함. ③「헌법파괴범죄등의공소시효에관한법률(가칭)」은 「형법」상 내란 및 외환
 죄와 「군형법」의 반란·이적죄와 같은 헌법파괴범죄와 집단살해 등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 관련자를 항구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
 록 함(새정치국민회의).

- 「12.12군사반란및5.18내란사건처리특별법률(가칭)」은 12.12군사반란과 5.
 18내란사건의 공소제기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
 제해야 함(민주당).

: 세계 95.9.23., 5면

○ 로스쿨도입관련 입법의견

- 로스쿨제도는 판례법 체계로 짜여진 미국식 제도로 우리나라 법현실에 맞지 않
 으며, 굳이 도입할 경우에는 교수채용 방식 개선, 실무위주로의 교과과정 전면
 개편 등이 전제되어야 함(서울고등법원·지방법원).

: 한국 95.7.15., 2면

○ 부정수표단속법 개정의견

- 부정수표발행에 대한 처벌은 사적 거래에 공권력이 개입하고 부도 중소기업의
 희생을 막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 한겨레 95.9.30., 3면

○ 소년법 개정의견

- 지금까지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이미 문제화된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에 그쳐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교육하려는 예방적 노력이 절실하고, 비행소년의 교육과 보호를 통한 교화개선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만큼 법무부 관할의 소년보호행정을 보건복지부나 문화체육부 또는 새로운 청소년전담 부서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운호 경기대 교정학과 교수).
- 청소년 가출과 아동학대 예방·치료 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소년문제에 적합한 새로운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청소년복지사업이 지역단위에서 실천되도록 해야 함(이용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 세계 95.9.19., 15면

○ 양성평등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헌법」은 포괄적인 성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고 여성관련 하위법들은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줄 독립법이 필요한 실정임(조형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임신을 직장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일로 인식하는 등 현행법이 대부분 남성의 관점에서 운용되고 있어 이런 폐단을 막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제정이 시급한 현실임(박은정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한겨레 95.7.16., 10면

○ 정보공개법(가칭) 제정의견

- 누구나 자신의 이름, 주소, 정보, 사용목적 등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한 뒤 해당기관의 공개 여부 결정을 거쳐 15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함.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 △공개시 국익 침해가 우려되는 국가안전이나 외교관계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관련한 정보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에 관한 정보 △범죄 수사·소추 관련 정보 △법인 및 단체의 영업기밀 등 9개 항목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함(총무처).
- 행정과정에 대한 제반정보의 공개를 보장하는 것이 부정과 부패를 사전에 예방

할뿐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적정한 정보의 공개는 행정관료들에게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주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공개된 정보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주므로 행정관료는 이를 근거로 상충부나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되어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음. 국가차원의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함은 기관마다 정보공개에 따른 불균형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국민의 정보공유권이 불평등하게 나타날 소지가 있으므로 정보의 공개를 속히 제도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와 행정을 감시하여야 함(민병일 호서전산전문학교 부교장).

: 한겨레 95.7.20., 2면; 동아 95.11.30., 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4-6호(118~119면) · 제95-1호(102~103면) · 제95-3호(106면) 참조

○ 출입국관리법 개정의견

-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우수한 외국인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체류상한기간이 현재 4년인 종교, 상사주재, 기업투자, 기술지도 자격을 6년으로, 무역경영, 교수, 방문동거는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기타자격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함(법무부).

: 한국 95.9.11.,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8면) · 제95-1호(102~103면) 참조

○ 행정조정법(가칭) 제정의견

- 민선 자치단체장시대가 출범하면서 각종 분쟁이 발생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효과적인 조정수단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총리실).

: 국민 95.8.18., 3면

II. 主要立法豫告法律案

1. 主要立法豫告法律案 目錄

(1995.7.1. ~ 1995.12.10)

◎ 憲政	97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統一·外務·國防	97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영해법중개정법률안	
◎ 內務·地方行政	98
○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풍수해대책법개정법률안	
◎ 社會·文化·教育	105
○ 교육법중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	
○ 방송법안	
○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안	
○ 사학진흥재단법중개정법률안	
○ 영화진흥법제정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원법안

◎ 産業 · 經濟 115

- 공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교통세법개정법률안
- 국제거래조세조정어관한법률안
-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방문판매등어관한법률안
- 선물거래법제정안
- 예금자보호법제정안
- 종합금융회사어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어관한법률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
- 중소기업자구조개선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법률안
- 한국조폐공사법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어관한법률안

◎ 建設 129

- 도로법중개정법률안
-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
- 주차장법개정법률안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133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령안
- 도시철도법개정안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어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環境 · 保健 136

- 해양오염방지법중개정법률안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어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法院·法務 137

- 공탁법중개정법률안
- 수표법중개정법률안
- 어음법중개정법률안
- 정보공개법제정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호적법중개정법률안

2. 主要立法豫告法律案 内容

(1995.7.1. ~ 1995.12.10)

◎ 憲 政

- 公職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10.18(내무부공고제1995-86호)

1. 改정이유 및 内容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957호)상 선거구역이 분리된 충북 보은·영동선거구와 옥천선거구를 폐지하고 생활권에 맞게 보은·옥천선거구와 영동선거구로 조정하고자 함.

◎ 統一·外務·國防

- 軍人연금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10.26(국방부공고제1995-17호)

1. 改정이유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30여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연금수급권자의 누적적 증가와 연금수급기간 장기화 등으로 군인연금회계에 적자가 발생하여, 비용부담률 상향조정을 통하여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主要내용

기여금 및 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 및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로 규정하던 것을 각각 1,0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영해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9.18(외무부공고제1995-9호)

1. 改정이유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따라 우리주변 해양관할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서 영해외측에 인접한 12해리 폭의 접속수역을 설치하여 밀수·불법출입국·검역관련 단속권한을 행사하고, 영해법 위반사범에 대한 벌금액수를 현실화하여 현행 2천만원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우리주변 해양질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제명을 영해법에서 영해및접속수역법으로 개정
- 나.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의 선 이내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으로 설정
- 다.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 법규위반 방지 및 동 위반행위의 처벌을 위한 접속수역에서의 관계당국의 권한 신설
- 라. 벌칙조항의 벌금상한액을 2천만원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인상

◎ 內務 · 地方行政

○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10.2(총무처공고제1995-45호)

1. 개정취지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30여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연금수급권자의 누적적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추세에 따른 연금수급기간 장기화 등으로 연금회계에 적자가 발생하여, 정부 및 공무원의 비용부담률 상향조정, 퇴직수당·사망조위금의 정부부담으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여금 및 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 및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각각 1,0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나. 퇴직수당 비용중 연금기금부담분과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정부부담으로 전환하도록 함.
- 다. 퇴직연금 지급에 있어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되는 공무원(1995년 12월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재직기간 합산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급개시 연령을 60세(법령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60세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으로 한다)로 하고, 55세이상 60세미만의 퇴직공무원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60세 미달연수에 따라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5 내지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금수급자의 취업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을 현행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으로부터 『정부 출자 또는 재정지원기관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무상대부 및 정부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과 정부에서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마.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에서 퇴직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및 퇴직이후에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전에 혼인한 배우자 및 입양한 자녀는 포함하도록 함.

바. 부부공무원 등 가족내에 복수의 연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일방의 사망시 본인의 퇴직연금외에 받게 되는 유족연금액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함.

사. 재임용된 공무원이 종전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합산신청기한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년이내로 한정하도록 함.

아. 재임용된 경우 종전의 직급·호봉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면 종전 직급의 보수월액으로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되, 다만 퇴직일 또는 퇴직익일에 재임용되어 연금법상 신분이 연결되고 종전의 직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직급·호봉에 의한 기여금 납부를 인정하도록 함.

자.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던 것을, 인사법령과의 일관성을 위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도록 함.

차.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한 때에는 계속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정함.

- 카.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진행 또는 형사재판 계류 시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유보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의 규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강화하고, 금고이상의 형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어 잔여금 지급시 지급유보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기여금·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징수 및 환수사유발생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
- 파.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철구 교부횟수 제한(1회)을 폐지하여 필요시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
- 하. 정부조직의 공사화·폐지 등 당해 연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기여금·부담금 및 전년도 연금기금운용수익금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미성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7.28(경찰청공고제1995-11호)

1. 개정이유

- 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및 불합리한 행정절차 간소화
- 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타법령과의 형법 불균형 개선
- 다. 어려운 용어를 알기쉽게 수정(정부행정용어순화편람 참조)

2. 주요골자

- 가. 미성년자가 소유·소지하는 담배·주류를 영치후 친권자 등에게 인수 또는 매각 처분하던것을 경찰서장이 재산 가치 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유권자 기타 권리인에게 반환하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함.
- 나. 미성년자에게 담배·주류 판매행위 등 유해한 장소 및 물품 제공·대여시 벌금 상향조정
 - (1) 유흥업소 출입시 1년이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2) 성도덕 등 풍기문란 장소제공시 3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

- (3) 불량만화, 음란도서, 도화 등 판매대여시 2년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다. 난해한 용어, 관계법령에 배치되는 용어, 의미가 중복되는 용어 등에 대한 수정

- (1) 깍연 → 흡연, 계기 → 규정
(2) 유흥접객업소 → 단란·유흥주점
(3) 포악성 또는 잔인성 → 잔인성

○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10.5(내무부공고제1995-81호)

1. 제안이유

신경제5개년계획의 과표현실화계획에 따라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주민세(소득할)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시설 및 유통단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며, 기타 세제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로 되어 있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로 연장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분으로 하되, 상속인 상호간에 연대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나.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사업시행에 적극협조하여 사업시행 초기인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대수에 응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금액의 최저한을 종전의 시가표준액에서 토지분은 종합토지세의 경우와 같이 자치단체가 정하는 비율의 공시지가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함.

라. 대도시 교통난 해소와 국가자원절약을 위하여 경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세

율을 현재의 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함.

마. 광역시에 편입된 군지역에 대한 주민세와 면허세의 세율을 종전의 군지역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광역시로 편입에 따른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함.

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 농지세액·법인세액·소득세액의 7.5퍼센트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사. 배기량이 큰 승용차에 부과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인하조정함(2,500cc~3,000cc : cc당 410원 → 310원, 3,000cc초과 : cc당 630원 → 370원).

아. 담배소비세에 대한 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국산담배와 외국담배를 구분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자.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토지분)의 과표기준을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하는 비율을 고하여 산정하도록 함.

차. 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후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

카. 어촌계가 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면제하고, 어민후계자 및 수산계열학교 졸업자가 취득하는 어업권과 어선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타. 천재 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에 자동차를 추가함.

파. 물류비용절감과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연안화물운송용선박에 대해서도 외항선박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며, 유통단지에 대해서도 공업단지수준으로 지방세를 감면(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50퍼센트 경감)하도록 함.

하.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및 공장입지확보

애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업단지안에서 중소기업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는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함.

○ 풍수해대책법개정법률안

예고일 : 95.8.12(내무부공고제1995-71호)

1. 개정이유

- 근래에 들어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재해취약요인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점차 다변화되고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선진 방재제도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역량을 제고하면서 지진방재대책의 제도화를 위해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법 적용대상인 자연재해의 범위에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재해이외에 지진, 가뭄을 추가함.
- 나. 재해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대책위원회를 두고,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과 재해예방, 재해복구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재해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다. 자연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방재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방재연구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차원의 방재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재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함.
- 라. 내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종합하여 방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지정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소관사항에 대한 방재집행계획과 지역방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마. 방재에 책임이 있는 각급 행정기관은 소관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유관기관과의 재해대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방재교육·훈련과 재해예방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수방물자들을 비축하도록 함.
- 사. 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재해영향 평가기관에서 재해영향평가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내무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재해완화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신설함.
- 아. 내무부장관은 지진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진방재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에 관계되는 시설 등에 대한 내진 설계기준을 정하여 관계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 차. 방재에 책임이 있는 각급행정기관은 재해발생 또는 우려시에 수방, 지진, 방재, 구조, 구호, 응급복구와 재해경보 발령 등 재해경감을 위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함.
- 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발생 또는 우려시에 재해예방 또는 경감을 위해 민방위대 등의 출동명령, 위험시설물 제거, 경계구역 설정 등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응급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송업자 등에 대한 종사명령과 시설·물자 등에 대하여 관리·수용할 수 있도록 함.
- 타. 재해발생시 시장·군수·구청장과 관계행정기관은 피해상황을 시·도지사 및 상급관청에 보고하고 소관시설 등에 대해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 복구하도록 함.
- 파. 내무부장관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지조사와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재해복구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관련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우선 계상할 수 있도록 함.
- 거. 국가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인 특별조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특별자연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함.

너. 대통령은 특별자연재해지역의 공공질서 유지와 신속한 재해수습을 위해 응급구조 및 복구, 생활필수품 수급 등에 대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행·재정적인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더.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응급대책에 종사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 또는 가료를 실시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함.

머.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대책의 비용 충당을 위해 매년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운영하도록 함.

버. 법 위반에 따른 벌칙내용을 법 집행력 확보와 다른 법률과의 형평 유지를 위하여 상향 조정함.

◎ 社會 · 文化 · 教育

○ 교육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8.31(교육부공고제1995-28호)

1. 개정이유

사회의 다양화·전문화 추세에 부응한 고급전문인력의 양성기회 확대와 양성기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대학원(석·박사 학위과정)만을 둔 교육기관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현행법 규정상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석사·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명예박사학위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을 제한함.

2. 주요골자

가. 대학원만을 둔 교육기관의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며, 대학원만 둔 교육기관

의 명칭도 대학으로 함.

- 나. 석사학위과정은 2년이상, 박사학위과정은 4년이상(석사학위과정 이수기간포함)으로 하며, 대학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함.
- 다. 대학원을 둔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박사학위과정을 둔 대학에서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

예고일 : 95.9.4(문화체육부공고제1995-58호)

1. 개정취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공연장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에게 모금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모금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모금거부자와 모금액 미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둬.
- 나. 모금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의무불이행에 대해 벌칙규정을 둬.

○ 방송법안

예고일 : 95.9.28(공보처공고제1995-5호)

1. 제정취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폐지하고 이를 단일방송법 체계로 통합하며, 규제완화를 통하여 뉴미디어·멀티미디어시대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부는 방송의 기본정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방송정책의 효율적 수립·조정 및 시행을 위하여 방송발전정책협의회를 둬.
- 나.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국운영자 및 전송망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

재허가 등의 절차를 규정함.

- 다. 대기업과 일간신문·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해 위성방송사업에 참여를 허용하되 보도전문편성방송에 대하여는 참여를 허용하지 아니함.
- 라. 방송사업자·대기업 및 일간신문·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종합유선방송국운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마. 종합유선방송국운영자의 상호경영 및 복수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허용함.
- 바. 현행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단일방송위원회로 통합함.
- 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접근권을 신설하고, 방송으로 인한 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함.
- 아. 방송업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방송기술연구기관·방송프로그램보관소·방송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방송제작단지·방송프로그램의 유통촉진 및 방송의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안

예고일 : 95.10.12(교육부공고제1995-41호)

1. 개정취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이후 20여년이 경과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소급 등 제도의 개선과 평균수명의 연장 추세는 평균 재직기간의 급격한 신장과 연금수급기간의 장기화 현상을 가져왔으며, 또한 연금비용부담율이 법시행 이후 고정되어 있어 연금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비용부담율의 탄력적인 조정, 퇴직수당·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의 국가부담으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에서 퇴직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및 퇴직이후에 입양한 자녀·손자녀는 제외하도록 함.
- 나.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계속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퇴직급여를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 재직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함.
- 다.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던 것을,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도록 함.
- 라. 재임용된 교직원이 종전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합산신청기한을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 1년이내로 한정하도록 함.
- 마. 강임,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가 종전직급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가 종전직급에 의한 개인부담금 부담부 및 보수월액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감액 되기전의 직급으로 계속하여 1년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을 받도록 함.
- 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지급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있어, 제3자가 당해 교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무수행중의 교직원인 경우에는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사. 의료보험법 개정('87.12.4. 법률 제3987호)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는 지역의료보험 적용대상이므로 사문화된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험료충당금 공제조항을 삭제함.
- 아. 부담주체별 연금비용부담율을 현재 보수월액의 5.5%(개인부담금 5.5%, 법인·국가부담금 5.5%)로 규정하던 것을, 부담주체별 상한율을 각각 7.5%이내로 인상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관리공단이 부담하던 것을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함.
- 차. 국가부담금 미납금에 대한 이자를 징수할 수 없던 것을 공무원연금법과 동등하게 이를 국가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카. 퇴직급여의 급격한 증가 등 당해연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부담금 및 전년도 연금기금운용수익금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타. 퇴직수당부담금을 관리공단이 일정액(매년 236억원)을 분담하던 것을 국가가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함.
- 파. 과오납된 부담금 및 환수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설정함.

하.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 유족연금액의 감액지급, 연금지급개시연령제, 연금지급정지제도,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규정을 준용함.

○ 사학진흥재단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10.18(교육부공고제1995-43호)

1. 개정이유

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 확대 및 이사회 기능강화와 함께 기금을 계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기금조성시 감독청의 승인 사항을 보고제로 하는 등 사학진흥재단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각급학교를 유지·경영하는 개별 사학재단과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재단”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재단의 사업으로 사학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수탁 지급 및 자체기금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

다. 이사회 기능 강화, 사학운영의 전문가, 교육재정전문가 등이 추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 7인의 이사 정수를 9인이내로 함.

라. 사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에 있어 1,500억원 이상 한도를 삭제함.

마.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재단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차입 또는 사학진흥채권을 발행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고제로 변경함.

○ 영화진흥법제정안

예고일 : 95.9.13(문화체육부공고제1995-63호)

1. 제정이유

· 문화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미래영상산업 시대에 능동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며, 영화를 영상산업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여, WTO체제 출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영상산업의 국제 경

쟁력을 확보하고

- 현행 영화법상의 제반 규제사항의 대폭 완화 및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율적 창작여건을 제도적으로 조성·지원함으로써 영화예술의 질적향상과 영상문화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법의 목적
 - 영화예술의 질적향상 및 영화산업의 육성·발전으로 국민 문화생활 향상 및 민족 문화진흥·용어의 정의
 - 한국영화, 외국영화, 공동제작영화, 극영화, 문화영화, 단편영화, 소형영화, 전용관, 영화업자, 영화인 등의 용어 정의 규정
- 영화진흥시책의 강구
 - 영화진흥시책 강구의 목적 및 시책에 포함할 사항 등 명시
 - 조사·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재정기반 확충·운영, 국제교류 및 기타 영화예술진흥 관련사항 등
- 영화업의 등록
 - 한국영화제작업, 공동제작영화제작업, 외국영화수입업의 등록의무(비극영화, 단편영화, 소형영화 등 제외)
 - 외국영화 수입업 및 35밀리이상 극영화제작업의 법인화의무.
- 영화업자 결격사유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 이법에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중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자 등
- 등록취소 등
 - 부정등록, 등록사항 임의 변경, 예탁금 또는 자본금의 부족, 제작 또는 수입실적 부족 등에 의한 등록취소 사유 명시
 - 등록 취소업자의 재등록 배제 기간(처분후 1년 이내) 등
- 영화의 독립제작
 - 영화제작업자가 아닌 자의 영화제작 관련규정
-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 국내 제작업자와 외국 제작업자간의 공동제작영화 제작신고 관련규정

- 영화의 수입추천
 - 외국영화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수입추진제도 명시
- 영화의 제작 및 수입편수의 조절
 - 문화체육부장관의 연간 제작 및 수입편수 조절 권한 명시
- 영화의 납본제
 - 한국영화, 공동제작영화제작업자의 원판 또는 복사본 1벌 납본 의무화
- 영화의 심의
 - 모든 영화의 상영전 공연윤리위원회 심의 의무
- 영화의 심의 기준
 -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 명시
 - 헌법의 기본질서, 국가의 권위, 미풍양속, 국제적 외교질서 및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보호 등
- 영상진흥금고 설치
 - 영화 및 비디오물산업 진흥을 위해 영상진흥금고를 영상진흥공사에 설치
- 영상진흥금고의 재원
 -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기타 수입금 등
- 영상진흥금고의 용도
 - 영화, 비디오등 영상산업분야 지원 등
- 전용관의 운영 및 지원 의무 명시
 - 공연장 경영자의 전용관 운영시 문화체육부장관의 지원 의무 명시
-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공연장 경영자의 한국영화 상영의무 규정
- 문화영화 동시상영 의무
 - 공연장 경영자의 극영화 상영시 문화영화 동시상영의무
- 영화상영의 제한
 - 부정심의, 심의조건 위반, 심의미필 영화 등에 대한 영화의 상영금지 또는 정지
- 공연장 허가청의 공연장 영업정지
 - 한국영화 상영 의무일수 미달 공연장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

- 영상진흥공사의 설립
 - 한국영화 및 관련 영상산업 등의 진흥을 위해 영상진흥공사 설립
- 영상진흥공사의 법인격
 - 공사의 법인화 및 민법상 재단법인 관련규정 준용
- 영상진흥공사에 대한 보조금
 - 정부예산 범위내의 공사운영 및 사업에 대한 보조금교부
- 영상진흥공사 사업계획등 승인
 - 공사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공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 행정처분과 관련한 청문
 - 행정처분시 청문기회 부여 및 청문 배제 규정 명시
- 권한의 위임·위탁
 -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 위임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벌칙규정
 - 미등록 업체의 영화제작·수입, 미추천 수입, 심의미필 상영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 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처분 위반자에 대한 벌칙
 -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불이행의 경우 1년이하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과태료 규정
 - 신고대상 업체의 미신고 영화제작(공동제작영화 포함), 수입추천전 선전물 제작·배포, 동시상영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한 5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 양벌규정
 - 제30조 또는 제31조 위반의 경우 행위자외에 법인과 대표자(개인)도 처벌토록 함.

부 칙

- 시행일
- 법률의 폐지 및 폐지전 행위에 대한 종전 벌칙규정 적용
- 영화진흥공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 동시 상영의무 규정에 시행후 4년 유효에 관한 경과조치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예고일 : 95.10.13(교육부공고제1995-42호)

1. 개정취지

“교육개혁을 뒷받침 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 (’95.8.30.)”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시·도세 수입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되, 1999년도 이후의 비율은 시·도세 수입액의 증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함.

나.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감)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예산편성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된 예산에 대하여는 시·도교육위원회는 감액할 수 없도록 함.

다. 시장, 군수 및 구청장(기초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9.29(노동부공고제1995-37호)

1. 개정이유

현행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금지를 폐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산업인력의 공급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 다.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금지를 폐지함.

○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

예고일 : 95.8.9(문화체육부공고제1995-52호)

1. 개정이유

지방자치제 시행과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의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권, 수련시설의 허가취소권, 수련시설의 양도·양수 승인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고 지방청소년 단체협의회 구성과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지역중심의 청소년육성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적극 이용하기 위해 수련시설외에 청소년이용시설의 개념을 도입하고 청소년 이용시설내의 청소년프로그램을 확충·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 청소년육성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기능을 강화하여 장·단기 청소년계획의 수립기능외에 주요청소년시책의 평가기능을 부여하여 정부내 청소년시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업무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 라. 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설확충 등에 민간이나 개인의 참여를 조장하기 위해 소규모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청소년수련지구내의 행위규제방식을 금지시설외에는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함.
- 마.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책임자'제도를 도입하고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

런시설에 배치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 운영책임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립하는 법인의 임원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기하여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시설의 공공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함.

○ 한국교육방송원법안

예고일 : 95.10.10(교육부공고제1995-40호)

1. 제정이유

한국교육개발원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송을 독립된 법인체로 설립하여 교육방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계속교육 기회의 확충과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여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교육방송원을 법인으로 하고 라디오 및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와, 교육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사업으로 하고, 방송순서의 편성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교육방송원의 임원은 이사장, 원장을 포함한 이사 11인과 감사 1인으로 하고 이사장, 원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으로 정함.

다. 원장은 이사회가 선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교육방송원의 운영 및 사업 소요 자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며, 운영재원은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공익자금, 기금운영수익금, 차입금 등으로 함.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방송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함.

바. 정부는 교육방송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産業 · 經濟

○ 공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8.10(통상산업부공고제1995-113호)

1. 개정취지

공업발전기금을 산업기반기금으로 개편하여 산업기반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공업발전법중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업발전기금중 첨단기술개발자금과 신제품개발자금을 분리하여 동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별도의 지원근거를 신설함.

나. 공업발전기금의 명칭을 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함.

다. 산업기반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에 물류, 유통, 환경 등 산업기반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중 환경보전부분과 유통근대화 자금을 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원함.

○ 교통세법개정법률안

예고일 : 95.9.20(재정경제원공고제1995-75호)

1. 개정이유

유가등락과 자유화에 대비하여 휘발유·경유에 과세되는 교통세를 종량세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휘발유·경유에 대해 과세되는 교통세를 종량세로 전환함.

나. 현행 탄력세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345, 경유는 리터당 40원을 기본세율로 책정함.

다. 세율인하시 환급을 받기 위해 제조장까지 환입을 해야 하던 것을 하치장까지만 환입한 경우에도 환입된 것으로 간주함.

○ 국제거래조세조정에관한법률안

예고일 : 95.9.7(재정경제원공고제1995-64호)

1. 제정취지

· 세계각국의 개방화 진전과 WTO출범 등으로 국제거래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 한편, 이들 국제거래의 절반 이상은 특수관계가 있는 다국적기업들 사이에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제거래 증가로 우리와 관련된 조세분쟁도 증가 추세에 있음.

- 따라서,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에 따라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 기업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는 결국 국가간의 조세행정협력을 통하면 해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제거래에 관한 과세문제와 국가간 행정협조 사항들이 함께 규정될 필요가 있어 이 법을 제정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전가격세제의 구체적 적용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

(1) 정상가격에 대한 개념규정과 비교가능제3자가격비교법·재판매가격법·원가가산법 등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규정함.

-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없는 독립된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함.

(2)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중 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국외특수관계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직접·간접소유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사유 등으로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를 말함.

(3) 이전가격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사전에 합의하는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4) 양국의 과세당국간에 상호합의절차를 통하여 외국에서의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의과세소득을 감액조정.

(5) 국제거래 관련자료의 제출의무를 명확히하고 동의무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6)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있어 소득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차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과실이 없는 것이 양국의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의 절차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나. 특수관계자간에 자본금의 납입을 적게하고 차입금을 증가시켜 조세를 회

피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1)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과소한 자본을 납입하고 차입금의 비중을 높여서 과세소득을 최소화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의 부채대 자본비율이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부인하도록 함.

(2) 국외지배주주가 보증하여 차입한 부채에 대하여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3) 그러나, 국외지배주주의 부채 대자본비율이 3배를 초과하는 경우일지라도 통상인정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부채의 경우는 제외하고, 업종별로 3배이상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따로 정하여 운용함.

다. 다국적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가벼운 지역(조세회피지 또는 경과세국)에 가공회사를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1) 내국법인 등이 해외 경과세국에 가공회사 등을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부당히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

(2) 적용대상자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의 사업방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한정함.

(3) 비정상적인 해외진출기업에만 적용함.

· 기업의 법인세부담율이 15/100이하인 지역에 조세회피목적으로 진출하는 기업에게만 적용

·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라. 국외증여시 증여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마련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의 재산을 외국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자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함.

(2) 다만, 당해 국가에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이중과세가 되므로 적용하지 않음.

마. 국가간의 조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세당국간 협의를 하는 절차를 명

확히 함.

- (1)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외국과세당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거나, 외국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거나, 양국 과세당국간에 과세소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때는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 신청.
- (2)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상호합의절차 종료후에도 국내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
- (3)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조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음. 다만, 이자상당가산액은 부과함.
- (4) 상호합의 종료일 이후 1년간과 부과제척기간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5) 상호합의기간은 5년이내로 함.
- (6) 납세자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비협조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세조약 시행을 위한 사항 및 조세에 관한 국가간 협조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 (1) 조세조약상 소득의 구분은 국내법상의 소득구분에 우선하여 적용
- (2) 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체약상대국이 조세의 징수를 요청해 왔을 경우 징수협조가 가능하도록 함.
- (3) 조세조약과 내국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당국간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조세정보를 상호교환하고, 동시세무조사, 파견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조사시에도 서로 협력하도록 함.

사. 이법의 시행시기

- (1)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 (2) 이전가액세제중 사전합의제도, 과소자본세제 및 경과세국을 이용한 조세회피규제제도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7년 1월 1일 부터 시행

○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9.12(재정경제원공고제1995-67호)

1. 개정이유 :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의 통합 추진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금의 설치근거법률을 동법 제2조에 의한 [별표]에서 삭제

나. 장기간 미조성 상태에 있는 생명공학연구기금, 농수산물 수출진흥기금,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 교도작업회전기금과 영세기금중 별도 기금으로 존치할 실익이 없는 농약관리기금, 농업산학협동기금의 설치근거법률을 동법 제2조에 의한 [별표]에서 삭제

다.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지 않아도 재원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출연기관기금의 설치 근거법률을 동법 제2조에 의한 [별표]에서 삭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안

예고일 : 95.9.7(통상산업부공고제1995-127호)

1. 개정취지

일반적인 점포판매방식에 비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큰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제도를 대폭 신설하고, 다단계판매에 비하여 판매원 및 소비자보호제도를 대폭 신설하고, 다단계판매에 비하여 판매원 및 소비자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방문판매에 대한 제도보완을 위하여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에 있어서의 소비자 및 판매원보호제도 보완

- 방문판매업등록제를 신설하여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방문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추가함.
 -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자 또는 방문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
 - 방문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하는 행위

나.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제도 신설

- 통신판매업등록제를 신설하여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상품대금을 받고도 청약의 승낙여부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상품대금을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이내에 상품을 인도하도록 하고, 상품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상품대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하여 소비자피해를 방지함.
-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품인도서를 함께 송부하도록 신설함.
- 통신판매업자로 부터 상품을 인도받은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신설함.
 - 소비자에게 인도된 상품이 훼손된 경우
 - 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된 경우
 - 상품의 인도가 광고에 표시된 상품의 인도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신규로 규정함.
 - 소비자의 구매신청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고 상품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선물거래법제정안

예고일 : 95.8.26(재정경제원공고제1995-51호)

1. 제정취지

가. 제정취지

- 개방경제체제로의 진전으로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선물거래제도를 구내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선물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 선물업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물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법안의 주요골자

(별지)

2. 주요내용

가. 선물거래에 대한 정의

- 선물거래에 대한 정의를 선물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물 시장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상품·금융상품·지수·옵션 등의 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규정하여, 이 법을 모든 선물거래에 대한 기본법으로 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신종 파생상품거래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선물거래소 설립

- 선물거래소는 회원제 조직으로서 회원을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만이 될 수 있음.
- 선물거래소를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함.
- 선물시장에서의 거래관련사항은 선물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하고, 선물거래와 관련한 선물거래소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함.
- 선물거래소의 회원이 고객으로부터 선물거래를 수탁할 경우 선물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르도록 함.

다. 선물업에 관한 사항

- 선물업은 선물거래업과 선물투자기금업으로 구분하고 각각 일정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재정경제원장관은 선물거래업허가시 필요한 경우 선물거래 대상품목별로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일정한 금융기관 등은 부수업무로서 선물거래업과 선물투자기금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되, 선물거래업과 선물투자기금업의 겸영은 금지하도록 함.
- 선물업을 영위함에 있어 거래위험 등의 사전고지, 자기계약금지 및 부당권유 행위금지 등 선물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정함.
 - 또한, 선물투자기금업자는 선물투자약관에 따라 선물거래 투자자로 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선물거래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도록 함.

라. 선물거래 감독에 관한 사항

- 재정경제원장관은 선물거래소, 선물업자 등 선물관련기관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감독권을 가지며, 선물거래위원회에 검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재정경제원장관은 선물거래소 및 그 회원, 선물업자 및 선물협회 등에 대하여 감독상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물시장의 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물거래위원회와 그 사무처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다만, 선물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동 위원회의 설립을 유보하고 위원회의 업무는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하되, 재정경제원장은 업무의 일부를 현물 감독기관 등에 위탁함.

마. 기타 사항

- 선물업자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선물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선물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선물거래관련 이해관계인간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선물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감육을 강화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가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과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정보공시, 내부통제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선물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법규위반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경과조치

- 주식·주가지수의 선물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하여 그이전에는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이 법 시행당시 외국환관리법상 외국환은행, 조달청장의 허가를 받은 선물거래중개회사 등은 기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이 법에 의한 선물거래업자로 봄.
- 선물거래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선물거래소 설립지원 등을 위하여 선물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예금자보호법제정안

예고일 : 95.8.10(재정경제원공고제1995-48호)

1. 제정사유

- WTO 체제출범 등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자율화·개방화

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지만 금융기관간의 경쟁 격화로 고수익·고위험 추구 등 경영위험의 증대로 부실 금융기관이 발생하고 나아가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앞으로도 우리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고 향후 부실 금융기관의 발생시 일시에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 없이도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리 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장래에 대비하는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예금은 원칙적으로 은행계정에서 수신된 예금, 적금 및 부금의 원금 및 이자와 원본보전계약이 체결된 금전신탁의 원본이익으로 함.
- 나. 예금보험 가입 대상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위의 가 항에서 규정된 예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함.
- 다. 예금보험 가입은행의 보험료는 위의 가 항에서 규정된 예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율(0.02% 예정)을 곱한 금액으로 함.
- 라. 은행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최고한도(1인당 2,000만원예정)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마.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고, 동 공사는 보험료수납 및 보험금지급 등의 예금보험업무 이외에 부실은행의 합병을 알선하고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 바. 보험료와 보험금 등 공사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계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예금보험공사내에 설치함.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예고일 : 95.8.31(재정경제원공고제1995-53호)

1. 개정취지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에 따라 단기금융회사의 종합금융회

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하여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의 금융업의 겸업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영역의 확대·조정

- 단기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하여 개정법률(안)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합리적으로 확대·조정함

나. 업무특화 유도

-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사의 경험 및 비교우위에 따라 취급할 주된 업무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특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다. 납입자본금 요건

-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다양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의 납입자본금 요건(300억원 이상)을 정함.
- 다만 기존금융회사 및 개정법률(안)에 의해 종합금융회사로 인가를 받은 단기금융회사중 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는 3년 이내에 충족하도록 함.

라. 콜거래중개회사 설립근거 마련

-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콜거래중개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가 콜거래중개 전담회사를 설립 할 수 있게 함.
- 현재 서울소재 8개 투자금융회사가 콜거래중개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동사가 개정법률(안)에 의해 종합금융회사로 인가를 받게 될 경우 콜거래중개의 중립성제고 필요

마. 경영공시제도 도입

-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른 방만한 경영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경영공시제도를 도입.

바. 경과조치

- 단기금융회사중 일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단기금융회

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종합금융회사의 통합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로 인가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

예고일 : 95.8.26(통상산업부공고제1995-119호)

1. 개정취지

산업지원관련 기금 및 자금을 기능별로 통합·단순화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자금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

(1)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등 4개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기금관리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의 사용용도를 정함.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

창업지원기금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별도계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창업지원 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등 동 기금관련 조항을 삭제

○ 중소기업자구조개선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법률안

예고일 : 95.9.23(통상산업부공고제1995-135호)

1. 제정취지

전반적인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제도나 시책의 지원체계로는 원활한 지원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 사업전환, 인력지원 및 시장재개발 촉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경영체질을 개선하고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에 법인전환, 기업간합병, 중소기업자간 공동사업 및 사업전환 등에 대하여 금융, 세제 및 행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연쇄도산 방지기능을 확충하고 납입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허용 등 유인시책을 마련하여 공제사업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기업간 물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결제조건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의 장당 금액을 일정금액이하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내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에 대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예산과 지원수단의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자가 일시적이고 전문적인 노동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파견 사업을 일정요건하에 허용함.
-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상의 특례를 마련하고 재개발 기간동안 가설시장 장소 마련 등 입점상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조폐공사법개정법률안

예고일 : 95.9.30(재정경제원공고제1995-86호)

1. 개정취지

'79년도 개정이후 16년간 개정되지 않은 한국조폐공사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국가신용경제질서유지에 필수적인 조폐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폐공사법이 개정('79.12.28)된 이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83.12.31.)됨에 따라 상호중복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타 정부투자기관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2조 등 관련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함.

나. 조폐사업은 국가신용질서와 관련되는 중요사업이므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사의 직원이 일정요건을 충

족한 후 명예퇴직을 원할 때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산공정의 기계화·자동화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

다. 보충은행권 유출사고 수사결과에 따른 관계법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범위를 현행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화폐 보관책임자의 과실에 대한 벌칙도 상향조정함.

라. 여유자금운용시 재경원장관이 승인하는 기관에만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재경원소속공무원을 감독관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감독규정을 다른 정부투자기관과의 감독규정과 균형을 맞추어 삭제함.

마. 은행권 등의 제조·납품에 관한 기본약정 체결 등 경영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 또는 제도 변경시에는 재경원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안

예고일 : 95.7.13(통상산업부공고제1995-97호)

1. 제정취지

국제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고, '92리우회담에서 채택된 산업계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청정생산기술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 활동을 지원하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중인 환경경영표준규격(ISO 1400)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경영인증제도의 도입 등 우리 산업계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공정개선, 청정 생산기술개발, 에너지 및 자원절약방안, 환경설비산업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5년단위의 종합시책을 수립함.

나. 업종별·품목별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료조달, 생산, 유통, 폐기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추진함.

다. 종합시책과 실천계획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산공정개선, 설비 개체 및 신·증설 투자사업에 자금을 우선 지원함.

- 라.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중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고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
- 마. 환경설비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하자보증 등을 위한 환경설비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바. 기업의 환경경영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경영규격제정, 인증기관지정, 인증사업실시, 연수기관지정 등 환경경영인증제도 실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환경정책심의회를 설치함.
- 아. 기후변화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 조정 및 보완 등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建設

○ 도로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7.3(건설교통부공고제1995-173호)

1. 개정이유

도로투자에 국가와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는 “국도준용도” 제도를 도입하고, 시관할구역내를 통과하는 국도의 대체우회도로 건설에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도로굴착에 따른 안전대책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도로의 종류에 국가가 노선을 지정하는 “국도준용도”를 추가하고 이를 도로와 시관할구역내를 통과하는 일반국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시·도지사 및 시장이 건설·관리하도록 함.
- 나. 국도준용도 및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가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 및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함.
- 다. 국도준용도 및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국고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

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함.

라.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준공후에는 준공도면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이에 위반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함.

마. 도로관리청에 행정대집행법의 예외규정을 인정하여 관리청의 제거지시를 무시하거나 반복·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직접 적치물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바.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

예고일 : 95.9.7(건설교통부공고제1995-270호)

1. 개정이유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도시환경의 변화와 생활권확대로 인한 도시의 광역화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도시계획결정권한을 중앙과 지방에 배분하며, 그동안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위임 또는 재위임에 의하여 행사하고 있는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현실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함. 다만, 국가적 차원의 도시계획,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계획 및 구역 등의 지정권한과 지역간 이해관계조정을 위한 조정지시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함.

나. 도시와 농촌의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공간적 범위를 현재의 생활권단위에서 행정구역단위로 설립되는 공간적 범위를 현재의 생활권단위에서 행정구역단위로 설정하고, 도시내 토지용도분류체계를 구역·지정 및 지구의 순서로 체계화하며

활용도가 낮거나 유사한 성격의 구역·지구 등을 통폐합함.

(1) 구역중 특정시설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상세계획구역·도시개발예정구역 및 광역계획구역은 폐지하고 시가화예정구역을 신설

(2) 지역중 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폐지하고, 생산녹지지역은 생산농림 지역으로함.

(3) 지구중 특수시설지구·유통시설지구(폐지되는 유통상업지역이 명칭변경)·고도이용지구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신설가능

다. 도시계획에 대한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인에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이와 관련한 상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입안제안권을 부여함.

라. 민간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시장·군수 등과 합의하면 이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간 합의제도를 도입하여 민간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함.

마.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도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입안내용 및 행위제한내용 등을 공고한 후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도로·쓰레기처리장 등 현재 각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입지·규모 등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만 받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없이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사. 주민기피시설인 쓰레기처리장 등 여러 시·도에 걸치는 광역시설의 설치·이용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도차원의 계획의 실현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도 도시계획 입안권을 부여함.

아. 도시의 적정한 기능분배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시내 토지를 구역·지역·지구로 구분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연계되어 운용되어야 할 건축법의 일부조항(지역별 허용건축물의 종류·용적률·건폐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수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재산권행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함.

○ 주차장법개정법률안

예고일 : 95.9.30(건설교통부공고제1995-305호)

1. 개정취지

주차장법 적용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도시 도심의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여 수요관리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및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지역을 도시계획구역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노상·노외주차장은 전지역)까지 확대함.

나. 주차난이 도심과 외곽지역, 도시와 농촌의 구별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의 의미가 상실되어 동제도를 폐지하고, 주차장정비 계획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도시 교통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노상주차장의 이용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제한시간을 초과하거나, 주차허가제를 시행하는 노상주차장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에 이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함.

라. 도시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차장의 표지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봄.

바. 부설주차장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이 기능유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제작자 등에게 안전도 검사 및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소유자 등에게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의무화함.

차. 부설주차장 확보의무 위반, 부설주차장기능 유지의무 위반 및 기계식주차

장 감사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령안

예고일 : 95.7.31(건설교통부공고제1995-214호)

1. 개정이유 : 지방자치제 시행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도시교통정비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교통수요관리 실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교통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현행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와 그 교통권역에 한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라도 현재의 교통여건과 향후 교통전망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함.
 - 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기간을 개선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집행을 도모하며, 다른 법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수립시 도시교통정비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 타계획과 유기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함.
 - 다. 종전에 교통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시교통정비지역밖의 신도시 건설, 공단조성 지역 등도 교통평가를 받도록 평가대상 범위를 확대함.
 - 라. 현행 교통평가서는 시장, 도지사 등을 경유하여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유기관 및 최종심의기관에 동시에 제출하여 검토하게 함으로써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심의면제와 약식심의제를 도입하여 심의절차를 간소화 함.
 - 마. 현행은 교통평가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더라도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는 바, 재심신청 절차를 새로이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함.
 - 바. 사업시행자는 심의결과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등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

사. 혼잡통행료 징수 등 교통수요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시장 등이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아. 시·도간에 걸치는 광역교통문제를 협의의 위해 광역교통정책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협의 불성립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재할 수 있도록 함.

자. 평가기관 단체인 교통평가진흥협회를 설립하여 평가관련 업무와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차. 기타 지구별 교통평가의 근거 마련, 평가기관의 등록기준 보완, 교통평가용역비용 산정기준 마련 등 규정

○ 도시철도법개정안

예고일 : 95.8.31(건설교통부공고제1995-258호)

1. 개정이유

도시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등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증대하는 도시철도건설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및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철도건설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10년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하여금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도시철도건설을 유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라. 도시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자가 도시철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자본유치로 인한 사철시대에 대비하고 원활한 인력수급과 정보·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마. 도시철도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자는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바. 도시철도차량의 표준을 확보하고 부품 등의 호환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의 표준사양을 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사. 도시철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을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 아. 도시철도용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8.26(정보통신부공고제1995-124호)

1. 개정취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중요성이 커져가는 전산망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전산망 표준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보화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법의 제정 목적에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추가함.
- 나. 정형화된 민원업무에 전자문서(EDI)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로 처리할 업무와 전산망관리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전자문서, 전자서명은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봄. 이를 위하여 전자문서 등의 정의와 전자문서의 효력·도달시기·공개·보관 및 위·변조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다. 전산망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망 안전·신뢰성 기술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전산망관련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적합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전산망표준 관련 제도를 정비함.

마. 지원가능한 정보공동활용체제의 범위를 확대함.

바. 전자문서 위·변조시의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함.

사. 기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변경함.

◎ 環境 · 保健

○ 해양오염방지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9.4(환경부공고제1995-31호)

1. 개정취지

해양오염사고시의 방제기능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해상발생폐유의 수거·처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대형선박에는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형선박은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형선박에는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형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수거를 용이하도록 함.

나. 종전에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폐유와 폐기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만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육상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종전에는 해양시설관리자에게 기름기록부를 비치하고 사용량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액체물질과 폐기물에 대하여도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도록 함.

라. 해역을 관할하는 해운항만청·수산청, 시·도와 대형유류공급시설을 해안에 설치한 정유사 및 선박수리조선소는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폐기물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기름·폐기물의 수집을 용이하도록 함.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유회수선·유회수기 등을 비치하도록 함.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8.10(환경부공고제1995-26호)

1. 개정취지

2000년대 선진환경기술 입국을 조기 실현하고, 국제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근간이 되는 환경기술개발사업과 환경산업기반조성사업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장기계획에 환경산업기반조성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나. 환경기술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기술개발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 심의회 설치

다.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이를 사업화하는 자 또는 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

라.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생산공정개선 또는 환경시설 투자자, 환경기술도입 및 기자재 수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마. 환경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보급, 환경기술개발 촉진·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정·운영

바. 환경기술개발보급 및 환경산업진흥 촉진을 위한 환경산업협회 설립

사.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형식승인제도 도입

아.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진단시 최소한의 경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자.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 法院·法務

○ 공탁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7.24(법무부공고제1995-26호)

1. 개정취지

공탁공무원은 지방법원장이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원조직법 및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이 각 개정되어 시·군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그 관할의 공탁사건을 처리할 공탁 공무원은 법원의 인력수급사정 및 업무량의 효율적 조정을 감안하여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등기소의 지휘·감독권이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에게 이관된 것에 발맞추어 법원의 관할구역내의 공탁공무원은 지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항고를 제기하던 것을 먼저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항고를 하도록 그 불복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탁공무원의 지정절차와 합리화

지원 관할의 공탁공무원에 대한 지정은 지원장이 하도록 하고, 시·군법원의 공탁공무원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지정

나.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개선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에 대한 재판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담당하며, 이의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도록 함.

다. 시행일 : 공포한 날

○ 수표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8.5(법무부공고제1995-29호)

1. 개정취지

국내·외 상거래 관행의 추세를 반영하여 종래 기명날인하도록 된 어음요건행위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용어를 알기쉬운 표현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명날인에 서명을 포함한다는 서명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

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용어를 알기쉬운 표현으로 변경함.

○ 어음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8.5(법무부공고제1995-27호)

1. 개정취지

국내·외 상거래 관행의 추세를 반영하여 종래 기명날인하도록 된 어음요건행위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용어를 알기쉬운 표현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명날인에 서명을 포함한다는 서명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

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용어를 알기쉬운 표현으로 변경함.

○ 정보공개법제정안

예고일 : 95.7.20(총무처공고제1995-29호)

1. 제정취지 및 내용

가. 제정취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내 용 : 별지와 같음

정보공개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부투자기관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기본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용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적용제외대상 정보

제6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적용제외대상 정보)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범죄의 예방, 수사, 소추,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공공기관 내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기관의 인사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감사, 감독, 검사, 규제, 입찰계약, 첨단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공공기관에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있는 사항중에서,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8.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9. 법인 및 그외의 단체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지장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 비공개필요성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한다.

제3장 정보공개절차

제8조(정보공개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접수·처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특정 및 사용목적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공지된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복제물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에 청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공개여부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에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그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한도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공공기간은 지체없이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와 불복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은 공개대상이 된 정보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정보공개 실시) ①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통지서에 의해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가 오손 또는 파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부분공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

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청구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액수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정보공개위원회

제14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에 각각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비공개결정의 통보를 받았거나 또는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게된 경우 당해 청구자가 제기한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해당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4. 기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공개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직무의 독립성) 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의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장 불복구제절차

제20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개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부되었을 경우

2. 기타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사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청구) ①청구인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비공개결정의 통보를 받거나 또는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게된 날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사청구(이하 "심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청구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2조(심사 및 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심사기간을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청구가 제기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는 당해 정보가 본인의 권익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말것을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가 심사청구사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시정조치의 권고 등) ①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개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공표) 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의 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5조(행정심판법의 준용)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행정소송) ①처분청 및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청구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등

제27조(제도총괄) 총무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

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28조(자료제공) 공공기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외에도 각종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공개 목록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0조(자료제출요구 등)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총무처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공무원의 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별칙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10.26(법무부공고제1995-37호)

1. 개정취지

-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대상으로 확대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정부관리기업체의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범위기준을 명백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정부관리 기업체로 하고, 그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봄.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였거나 또는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당해 기업체 운영재산의 2분의 1이상인 기업체
- 나.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또는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 다.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및 직원규모, 해당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호적법중개정법률안

예고일 : 95.7.24(법무부공고제1995-25호)

1. 개정취지

호적신고서 등재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년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사무를 간소화하고, 협의이혼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 함으로써 재외국민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를 둔 시내 구간에서의 전적을 허용하여 시민의 편의도모 및 호적관서간에 업무량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출생년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도록 함.
- 나. 협의상 이혼의 확인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의 기산일을 이혼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 함.
- 다. 구를 둔 시내의 구간에서의 전적을 허용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일시는 동지역만으로 한정하여 시와 읍·면간의 전적이 가능하도록 함.
- 라. 시행일 : 공포한 날

Ⅲ. 最新法令 目錄

(1995.7. 1. ~ 1995.12.10)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법 률 4950	재난관리법	1995. 7.18
495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	1995. 7.26
4952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53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5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5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56	주세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5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58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59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60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61	검찰청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63	헌법재판소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64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1995. 8. 4
4965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6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6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68	대한무역진흥공사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69	정보화촉진기본법	1995. 8. 4
4970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71	국민연금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72	의료보험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73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4974	의료보험법 중 개정 법률	1995. 8. 4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4975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5. 8. 4
4976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	1995. 8. 4
4977	공업발전법중개정법률	1995.11.22
497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	1995.11.22
497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	1995.11.22
4980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1995.12. 6
498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995.12. 6
4982	관세법중개정법률	1995.12. 6
4983	세무사법중개정법률	1995.12. 6
4984	관세사법	1995.12. 6
4985	한국국제협력단법중개정법률	1995.12. 6
4986	영해법중개정법률	1995.12. 6
4987	외무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95.12. 6
4988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5.12. 6
498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	1995.12. 6
4990	사격및사격장단속법중개정법률	1995.12. 6
4991	미성년자보호법중개정법률	1995.12. 6
4992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95.12. 6
4993	풍수해대책법개정법률	1995.12. 6
4994	경기도과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관한법률	1995.12. 6
4995	지방세법중개정법률	1995.12. 6
499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	1995.12. 6
4997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	1995.12. 6
4998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률	1995.12. 6
4999	유선방송관리법중개정법률	1995.12. 6
5000	행정심판법중개정법률	1995.12. 6
5001	공탁법중개정법률	1995.12. 6

공 포 번 호	진 명	공포연월일
5002	집달관법개정법률	1995.12. 6
5003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률	1995.12. 6
5004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1995.12. 6
5005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중개정법률	1995.12. 6
5006	등기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	1995.12. 6
5007	민사조정법중개정법률	1995.12. 6
5008	호적법중개정법률	1995.12. 6
5009	어음법중개정법률	1995.12. 6
5010	수표법중개정법률	1995.12. 6
501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1995.12. 6
5012	검사정원법중개정법률	1995.12. 6
5013	혼인에관한특례법	1995.12. 6
5014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1995.12. 6
5015	저작권법중개정법률	1995.12. 6
501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	1995.12. 6
5017	보건의료기술진흥법	1995.12. 6
5018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	1995.12. 6
5019	비료관리법개정법률	1995.12. 6
5020	농촌진흥법개정법률	1995.12. 6
5021	식물방역법개정법률	1995.12. 6
5022	인삼산업법	1995.12. 6
5023	농약관리법개정법률	1995.12. 6
5024	종자산업법	1995.12. 6
5025	도로법중개정법률	1995.12. 6
5026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	1995.12. 6
5027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1995.12. 6
조 약 1295	대한민국정부와오만왕국정부간의문화협정	1995. 7.15
1296	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대외 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1995. 7.15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297	대한민국정부와슬로바키아공화국정부간의사증 면제에관한교환각서	1995. 7.22
1298	대한민국정부와영국정부간의해상운송에관한협 정	1995. 7.26
1299	대한민국정부와이스라엘국정부간의문화협력에 관한협정	1995. 7.28
1300	대한민국정부와남아프리카공화국정부간의각자 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	1995. 7.31
1301	북태평양해양과학기술기구협약	1995. 8. 1
1302	대한민국정부와타지키스탄공화국정부간의투자 의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	1995. 8.17
1303	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을위한전문가이용에관한 협정	1995. 8.18
1304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조세의이중 과세회피를위한협약	1995. 8.26
1305	대한민국정부와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예술,문 화및체육협력에관한협정	1995. 9.14
1306	대한민국정부와나미비아공화국정부간의경제· 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	1995. 9.19
1307	대한민국정부와이스라엘국정부간의과학및기술 협력에관한협정	1995. 9.25
1308	1979년해상수색및구조에관한국제협약	1995. 9.28
1309	대한민국정부와가나공화국간의대외경제협력기 금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1995.10.14
1310	국제코스파스-살새트계획과의지상부분제공국 으로서의제휴에관한통고서한	1995.10.25
1311	대한민국정부와그리스공화국정부간의투자의상 호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	1995.11. 4
1312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 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협정	1995.11.21
1313	대한민국정부와크로아티아공화국정부간의무역 협정	1995.11.25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314	대한민국정부와네덜란드왕국정부간의해상운송 에관한협정	1995.12. 6
대 통 령 령 14692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1995. 7. 1
14693	소하천정비법시행령	1995. 7. 1
14694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 1
14695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령	1995. 7. 1
1469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개정령	1995. 7. 1
14697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 한법률시행령	1995. 7. 1
1469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 1
1469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1995. 7. 1
14700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1995. 7. 1
14701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5. 7. 1
14702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개정령	1995. 7. 1
14703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 1
14704	정치운동이허용되는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 정	1995. 7. 1
14705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1995. 7. 1
14706	종묘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 1
14707	수도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 1
14708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1995. 7. 1
14709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 률시행령중개정령	1995. 7. 1
147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995. 7. 6
1471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1995. 7. 6
1471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 령	1995. 7. 6
14713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개정령	1995. 7. 6
14714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 6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7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1995. 7. 6
14716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 6
14717	공업발전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 6
14718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개정령	1995. 7. 6
14719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개정령	1995. 7. 6
14720	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 6
14721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 6
14722	도시철도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 6
14723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 6
14724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7. 8
14725	외무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1995. 7.13
14726	관광정책심의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95. 7.13
14727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개정령	1995. 7.13
14728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7.13
14729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7.13
1473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중개정령	1995. 7.13
14731	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13
14732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13
14733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1995. 7.13
14734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14
14735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14
147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14
14737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5. 7.15
14738	재난관리법시행령	1995. 7.18
14739	행정서사법시행령개정령	1995. 7.20
14740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5. 7.20
14741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1995. 7.21
14742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 산전문학교설치령	1995. 7.27
1474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8. 4

공 포 번 호	진 명	공포연월일
1474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8. 4
14745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8. 4
14746	교육개혁추진위원회규정	1995. 8. 9
14747	소방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8.10
14748	법제업무운영규정	1995. 8.10
14749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8.12
14750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8.17
1475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8.17
14752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8.18
14753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8.21
14754	육군제병협동교육본부령폐지령	1995. 8.21
14755	전력증강사업추진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95. 8.21
14756	행형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8.26
14757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1995. 9. 1
14758	근로감독관규정중개정령	1995. 9. 2
14759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9. 2
14760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1995. 9.13
14761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1995. 9.13
14762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개정령	1995. 9.13
14763	인력정책심의위원회규정폐지령	1995. 9.16
14764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중개정령	1995. 9.18
14765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9.18
14766	노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9.18
14767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9.21
14768	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9.22
14769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1995. 9.22
14770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1995. 9.22
14771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5. 9.22
14772	공업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 9.22
14773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중개정령	1995. 9.28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774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9. 30
14775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특례규정중개정령	1995. 9. 30
14776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중개정령	1995. 9. 30
14777	외자도입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0. 5
14778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0. 5
14779	학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0. 6
1478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개정령	1995.10.16
14781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0.16
14782	입양특례법시행령개정령	1995.10.16
1478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0.16
14784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0.19
14785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0.19
14786	특허등록령중개정령	1995.10.19
1478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0.19
14788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5.10.19
14789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0.19
14790	행정조정실직제중개정령	1995.10.19
14791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10.19
14792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10.19
14793	통상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10.19
14794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10.19
14795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10.19
14796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10.19
14797	원자력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0.19
14798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1995.11. 6
14799	신경제추진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95.11. 6
14800	도선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1. 6
14801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1. 7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480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1.18
14803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1995.11.22
14804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5.11.22
14805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1.22
14806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개정령	1995.11.22
1480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개정령	1995.11.22
14808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11.22
14809	문화재관리국직제중개정령	1995.11.22
14810	과학기술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11.22
14811	공무원인사정책심의회규정	1995.11.22
14812	예산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1.30
14813	통계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95.11.30
14814	새마을금고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1.30
14815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1.30
14816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개정령	1995.11.30
14817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2. 1
14818	일반사면령	1995.12. 2
14819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2. 6
14820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12. 6
14821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1995.12. 7
1482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5.12. 7
14823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5.12. 7
총 리 령 51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5. 7. 6
5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5. 7. 6
513	관세법제12조의3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 과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7.10
514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7조 에의한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7.10
515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8.12
516	통계사무소출장소설치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8.12

공포번호	건명	공포연월일	
517	개정경제원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1995. 9.22	
518	공정거래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995. 9.22	
519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9.29	
520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7조에의한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10. 2	
521	외자도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0. 5	
52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0.20	
523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0.20	
524	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10.30	
525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중개정령	1995.11.16	
526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중개정령	1995.11.22	
527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1.28	
528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1.28	
529	해양과학조사법시행규칙	1995.11.28	
530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2. 5	
53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2. 5	
외무부령	180	외무부재외연구생규정폐지령	1995. 9.13
	181	여권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9.23
	182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0.10
	183	재외공관주재관및주재무관의대외직명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10.10
내무부령	651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7. 1
	652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1995. 7. 6
	653	지방공무원평정규칙개정령	1995. 7. 8
	654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5. 7.28
	655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5. 7. 8
	656	행정서사법시행규칙개정령	1995. 7.28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657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중개정령	1995. 8. 5
658	공립대학심의위원회운영규칙	1995. 8.21
659	조례·규칙심의회의운영규칙	1995. 9. 4
660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1995. 9. 1
661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9.15
662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9.30
663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0.14
664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4항의규정에의한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1995.10.19
665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0.23
666	재난관리법시행규칙	1995.11.21
법 무 부 령 40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1995. 7. 3
408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개정령	1995. 7.10
409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개정령	1995. 7.10
410	교도관점검규칙중개정령	1995. 7.29
411	제소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개정령	1995. 8.11
412	재소자의류및침구제식등규칙중개정령	1995. 8.18
413	공중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8.18
414	교도관집무규칙중개정령	1995. 9.11
415	교도관복제규칙중개정령	1995.10.30
416	어음교환소지정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11.16
417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2. 1
국 방 부 령 458	군종장교요원선발규칙중개정령	1995. 8. 5
459	군종사관후보생규칙중개정령	1995. 8. 5
460	군무회의규칙중개정령	1995. 9.18
461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9.20
462	군인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0.24
교 육 부 령 663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	1995. 8. 1
664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	1995. 8. 1
665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중개정령	1995. 8.10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666 체력검사수검료징수규칙중개정령	1995. 8.19
	667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개정령	1995. 8.21
	668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정폐지령	1995. 9. 2
	670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규칙	1995.11.16
	671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11.16
	672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1.30
농림수산부령	1198 종묘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7.28
	1199 산림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7. 5
	120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7. 8
	1201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7.15
	1202 농산물검사규격규칙중개정령	1995. 7.24
	1203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7.28
	1204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7.31
	1205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8. 1
	1206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검정규칙중개정령	1995. 8. 2
	1207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1995. 8.12
	1208 잠업법시행규칙개정령	1995. 8.16
	1209 작물통계조사규칙중개정령	1995. 8.18
	1210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8.17
	1211 어선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8.18
	1212 산림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8.30
	1213 원양어선의조업동태등의보고에관한규칙개정령	1995. 9. 1
	1214 국립농업자재검사소검사위탁규칙폐지령	1995. 9. 7
	1215 생사료검사규칙개정령	1995. 9.19
통상산업부령	13 공업발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7. 8
	14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7.10

공 포 번 호	진 명	공포연월일
	1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1995. 7.18
	1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1995. 7.22
	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7.22
	1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5. 7.29
	19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7.31
	20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5. 8. 3
	2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5. 8. 3
	22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	1995. 8. 7
	2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개정령	1995. 8.11
	24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개정령	1995. 8.31
	25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1.24
정보통신부령	10 전기통신공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7.14
	1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1.28
환 경 부 령	13 수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7. 1
보건복지부령	8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5. 7.15
	9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1995. 7.31
	10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8.31
	11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1995. 9.11
	12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9.23
노 동 부 령	10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0.16
	10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1.16
	10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1.23
건설교통부령	20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7. 5
	21 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7.14
	22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7.21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23	도시철도운전규칙	1995. 7.27
26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7.29
27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8. 5
28	건설교통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1995. 8.10
29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 8.12
30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1995. 9. 1
31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우수사업장인정등에관한 규칙개정령	1995. 9. 4
3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5. 9. 4
33	공항시설관리규칙중개정령	1995. 9.22
34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0.12
35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0.17
36	건설교통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 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995.10.17
37	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0.28
38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0.28
39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5.11. 6
40	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개정령	1995.11.11
41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5.11.25

국내입법의견조사 95-4 老人福祉法制의 改善

1995년 12월 25일 印刷

1995년 12월 30일 發行

發行人 白 南 辰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5,000 원

